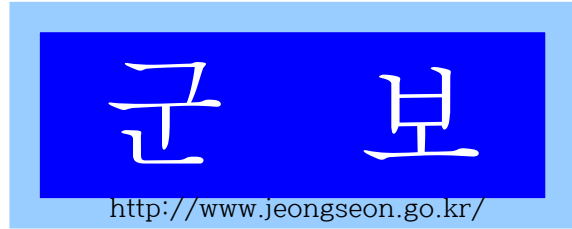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8호 2018. 12. 21.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9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18
- 정선군 조례 제269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2
- 정선군 조례 제2695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29
- 정선군 조례 제2696호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33
- 정선군 조례 제2697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4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09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76

○ 정선군 규칙 제131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3
○ 정선군 규칙 제1311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29
○ 정선군 규칙 제1312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을”을 “(실·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단에는 실장·과장·단장”을 “실·과에는 실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실·과·단 등)”을 “(실·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실
2. 행정과
3. 세무과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계과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지과
7. 민원과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과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림과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경제과

12. 안전과

제3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설과

14. 도시과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단장은” 을 “실·과는” 으로 한다.

제4조 제목 “(기획감사실)” 을 “(기획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실장” 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자치행정과)” 를 “(행정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세무회계과)” 를 “(세무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회계과장” 을 “세무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회계의 운영 및 평가
2. 세출예산 집행관리 및 회계결산
3. 공사, 용역, 구매 계약체결
4. 물품관리 총괄
5.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6. 국·공유재산의 관리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

제8조 제목 “(주민생활지원과)” 를 “(복지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복지과장” 으로 한다.

제9조 제목 “(민원봉사과)” 를 “(민원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봉사과장” 을 “민원과장” 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환경산림과)” 를 “(환경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림과장” 을 “환경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영향평” 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환경영향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산림관리

등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산림기본계획수립 및 조림·육림 업무
2. 산림농업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3. 군유림 및 산지이용 업무
4.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
5. 산림 내 토석채취, 산지전용 및 복구지도
6. 그 밖에 산림관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2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 업무
11.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12.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업무

제13조 제목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안전건설과)”를 “(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총괄”을 “안전정책 총괄·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업무
3. 사회재난 상황관리·피해조사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재난대비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공공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
6.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운용관리
7. 재난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업무
8.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9. 교통·운수 관리 및 조정 업무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업무
2.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 전반
3. 군도·농어촌도로·마을안길 농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4. 철도 및 건널목 관리
5. 하천·소하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6. 지방하천·소하천 인·허가 업무 전반
7. 자연재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업무
9. 자연재난 상황관리·복구사업비 총괄 조정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급경사지 지구·지정 및 사업추진
1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
1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사무

제15조 제목 “(도시건축과)” 를 “(도시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축과장” 을 “도시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수질환경사업소” 를 “상하수도사업소” 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질환경사업소” 를 각각 “상하수도사업소” 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사업소장” 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실장” 으로 한다.

②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한다.

③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복지과장” 으로 한다.

④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 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환경산림과장”을 “기획실장, 환경과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 ⑥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 ⑦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2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 ⑧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 ⑨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부군수, 기획실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 ⑩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행정과장, 복지과장, 경제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 ⑪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 ⑫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복지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 ⑬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실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 ⑭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⑮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하고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삭제 한다.

⑩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안전건설과”를 각각 “건설과”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⑫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⑬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⑯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⑰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⑱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⑳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세무회계과장”을 “기획실장이 되고, 세무과장”으로 한다.

㉓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㉔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㉕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㉖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㉗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질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㉘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㉙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㉚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㉛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㉜ 정선군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 ㉟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 ㊱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 ㊲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 ㊳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 ㊴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
- ㊵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 ㊶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등)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는 본청(실·과·단을 말한다)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면을 말한다)을 둔다.	제2조(설치 등) ① ----- ------(<u>실·과</u> 를 ----- ----- -----.
② <u>실·과·단</u> 에는 <u>실장·과장·단장</u> 등 보조·보좌기관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소장을, 하부행정기관에는 읍장·면장을 둔다.	② <u>실·과</u> 에는 <u>실장·과장</u> ----- ----- -----.
③ 제2항에 따른 <u>실장·과장·단장</u> , 소장 및 읍장·면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u>실장·과장</u> ----- ----- ----- --.
제3조(<u>실·과·단</u> 등)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 각 호의 실·과를 둔다.	제3조(<u>실·과</u> 등) ① ----- ----- -----.
1. <u>기획감사실</u>	1. <u>기획실</u>
2. <u>자치행정과</u>	2. <u>행정과</u>
3. <u>세무회계과</u>	3. <u>세무과</u>
<신 설>	4. <u>회계과</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u>주민생활지원과</u>	<삭 제>
6. <u>민원봉사과</u>	6. <u>복지과</u>
7. <u>환경산림과</u>	7. <u>민원과</u>
<신 설>	8. <u>환경과</u>
8. <u>삭 제</u>	

<신 설>

9. (생 략)

10. 지역경제과

11. 안전건설과

12. 도시건축과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과 외에 다음 각 호의 한시기구를 둔다.

1. 동계올림픽지원 등의 사무를 분장하는 동계올림픽지원단

2. 삭제

③ 실·과·단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3. (생 략)

제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8. (생 략)

9. 민방위 관련업무, 충무계획 및 정부연습계획의 실시 업무

10. ~ 14. (생 략)

제6조(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7. (생 략)

9. 산림과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삭 제>

11. 경제과

12. 안전과

13. 건설과

14. 도시과

<삭 제>

③ 실·과는 -----

-----.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
-----.

1. ~ 13. (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과) 행정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14. (현행과 같음)

제6조(세무과) 세무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8. 공사, 용역, 구매 계약체결

9. 물품관리 총괄

10. 세출예산 집행관리 및 회계결산

11. 회계의 운영 및 평가

12.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13. 국·공유재산의 관리

14. (생략)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4.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회계의 운영 및 평가

2. 세출예산 집행관리 및 회계결산

3. 공사, 용역, 구매 계약체결

4. 물품관리 총괄

5.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6. 국·공유재산의 관리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7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제8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0. (생략)

제9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2. (생략)

제10조(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은

제7조(여성청소년과) -----
-----.

1. ~ 7. (현행과 같음)

8. 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8조(복지과) 복지과장-----
-----.

1. ~ 10. (현행과 같음)

제9조(민원과) 민원과장-----
-----.

1.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과) 환경과장-----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2. (생 략)
3. 환경영향평가 지도
4. ~ 8. (생 략)
9. 산림기본계획수립 및 조림·육림 업무
10. 산림농업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11. 군유림 및 산지이용 업무
12.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
13. 산림 내 토석채취, 산지전용 및 복구지도
14. 그 밖에 산림관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신 설>

제12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6. (생 략)
7. 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
8. · 9.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환경영향평
4. ~ 8.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14. ----- 규칙-----

제10조의2(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산림기본계획수립 및 조림·육림 업무
2. 산림농업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3. 군유림 및 산지이용 업무
4.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
5. 산림 내 토석채취, 산지전용 및 복구지도
6. 그 밖에 산림관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2조(문화관광과) -----
-----.

1. ~ 6. (현행과 같음)
- <삭 제>
8. · 9. (현행과 같음)
10.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업무

10.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6. (생 략)

제14조(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총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업무

2. 사회안전·재난대책의 수립 및 집행

3. 풍수해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4.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전반

5.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

6. 재난대비 교육, 안전점검 및 지도

7. 하천·소하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9.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신설·
개수 및 유지관리

10. (생 략)

<신 설>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12.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업무

제13조(경제과) 경제과장-----

1. ~ 16.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과) 안전과장-----
-----.

1. 안전정책 총괄·조정 -----

2.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
성 및 운영 업무

3. 사회재난 상황관리·피해조사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재난대
비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공공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관한 업무

6.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난안
전 특별교부세 운용관리

7. 재난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업무

8.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9. 교통·운수 관리 및 조정 업무

10.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14. 교통·운수 조정업무

15. (생 략)

제16조(동계올림픽지원단) ① 동계
올림픽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동계올림픽 청산 계획수립 및 시행

2. 삭제

3.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

1.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업무

2.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 전반

3. 군도·농어촌도로·마을안길 농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4. 철도 및 건널목 관리

5. 하천·소하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6. 지방하천·소하천 인·허가 업무 전반

7. 자연재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
성 및 운영 업무

9. 자연재난 상황관리·복구사업비
총괄 조정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급경사
지 지구·지정 및 사업추진

1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

1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사무

제15조(도시과) 도시과장-----
-----.

1.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5. (현행과 같음)

<삭 제>

획 및 관리4.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업무

5.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6.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업무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4장 수질환경사업소

제24조(설치) ① 군에 법 제114조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관장사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질
 환경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수질환경사업소의 위치는 정선
 군 정선읍 정선로 1047에 둔다.

제26조(소관사무) 수질환경사업소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 략)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

제24조(설치) ① -----

 ----- 상하수도사업소-
 -----.

② 상하수도사업소-----
 -----.

제26조(소관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
 -----.

1. ~ 8.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 가. 동계올림픽지원단 한시기간 종료에 따른 부서 폐지
 나. 정부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행정기구 확대 개편 추진

주요내용

- 가. 행정 편의적 부서명칭을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변경

- 기획감사실 → 기획실
- 자치행정과 → 행정과
- 세무회계과 → 세무과, 회계과,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과
- 민원봉사과 → 민원과
- 환경산림과 → 환경과, 산림과
- 지역경제과 → 경제과
- 안전건설과 → 안전과, 건설과
- 도시건축과 → 도시과
- 수질환경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4조, 제26조)

- 나. 세무과 및 회계과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 제6조의2)
 다. 환경과 및 산림과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제10조의2)
 라. 안전과 및 건설과 분장사무 조정(안 제14조, 제14조의2)
 마. 동계올림픽지원단 한시기구 폐지(안 제16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06명” 를 “62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5명” 을 “618명 ”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29	629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604	604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27	12	2	3	1	9
6급 이하 계	572	572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06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595명</u>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u>629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618명</u> 2.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 가. 동계올림픽지원단 한시 기한 종료에 따른 정원 감원.
- 나. 지방세, 지적재조사, 신재생에너지, 수질총량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복지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안전·건설·농업·산림·환경 분야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06명→629명 (증 23명)
 - 집행기관의 총수 : 595명→618명 (증 2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 나.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4급·5급 : 본청(2), 직속기관(1) (변동 없음)
 - 5급 : 본청(12), 의회(2), 직속기관(3), 사업소(1), 읍면(9) (증 2명)
 - 6급이하 : (551) ⇒ (572) (증 21명)
 - 지도직 : (20) ⇒ (20) (변동 없음)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5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리 명	이장 정수	분구리명	구 역
계		183		
정선읍	봉양리	10	봉양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상동 일부(시장) 정선군법원, 삼우주택, 정선농협 부근 중동 하동 녹도 일부 관음, 생탄, 세대, 동곡 상동 일부, 적거리 녹도 일부 녹도 일부 봉양주공아파트, 보건소, 소방서 일원
	북실리	5	북실1리 2리 3리 4리 5리	용담, 계봉, 병방치 마미곡, 개간제, 오암, 부곡, 간곡 군부대, 아리랑아파트 일대 사내(미천) 미소빌아파트, 현대아파트
	덕송리	2	덕송1리 2리	석교동, 남덕동, 내반점, 외반점 월천, 송오
	애산리	5	애산1리 2리 3리 4리 5리	병방, 어촌, 신촌 역전 일부 오반 구미, 이절, 개골 역전 일부
	신월리	2	신월1리 2리	와평, 드름터 월통, 신치, 어치
	덕우리	1	덕우리	덕산기, 대촌, 삼거리, 유천, 거어리
	여탄리	1	여탄리	옛둔, 화작동, 중북동, 본동
	회동리	2	회동1리 2리	월평, 사택 본동, 세곡, 양지마을, 마항(말목)
	용탄리	3	용탄1리 2리 3리	내촌, 곡구, 실론, 비룡동, 노미, 이평, 세곡 벽탄, 월평 기곡, 점촌, 행마
	광하리	2	광하1리 2리	광석, 군연, 상평, 송단, 모평, 선곡 망하, 여곡, 소탄, 마전
	굴암리	1	굴암리	상굴암, 본동, 하굴암, 의암, 월포, 동무지, 만지산, 옷바우
	가수리	1	가수리	수매, 북대, 가탄, 해매

고한읍	고한리	20	고한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 12리 13리 14리 15리 16리 17리 18리 19리 20리	만항, 평화촌 두문동 일부 두문동 일부, 소두문동 박심리, 삼봉 상갈래 일부, 절골 중갈래 일부, 중앙아파트, 새마을사택 중갈래 일부, 진골 고한주공아파트, 강원랜드다목적숙소 일원 당목, 대원아파트 일원 시장 일부 막골, 신사택 구 읍사무소 일원 북부사택, 홀아비골 고도일 부금소, 목골, 진밭골 물한이골 양지마을 하갈래 시장 일부 정선군임대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일원
사북읍	직전리	1	직전리	무낼, 피내, 주막거리, 발전
	사북리	12	사북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 12리	범바위 사북아파트, 선명1차 아파트 일원 시내 아랫사북, 구 중앙사택 일원 골말, 화절령, 구)동원아파트 일원 도사곡 웃사북 일부, 소잡느골 중앙시장 일원 선명오피스텔, 선명소라파크 일원 웃사북 일부 북일 산수빌아파트 일원
신동읍	예미리	7	예미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본동, 의림길 유문동 용거리, 수해민주택 일원 재건촌 노일 일부, 용주골 노일 일부, 역전 납돌
	천포리	1	천포리	예미산, 내곡, 곡길, 본동, 양지마을
	조동리	9	조동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절골, 장미연립 일원 안길운 개미촌, 구룡동 시장 일원 함백초등학교 일원 새골 수해민주택 일원 안경다리 함백종고 일원

신동읍	방제리	2	방제1리 2리	매화동, 장재터, 원방제, 미륵골, 둔박골, 덕세 새비재, 설령, 전략촌 새비재, 설령, 전략촌
	가사리	1	가사리	원가사, 남애, 두리골, 황장골, 마차재
	고성리	2	고성1리 2리	평구, 수촌, 고림 내창, 병산, 고방, 신진
	덕천리	1	덕천리	원덕천, 소골, 제장, 연포, 바세, 구포
	운치리	3	운치1리 2리 3리	돈이치, 텃골, 터일, 기곡 수동, 번평, 고재벌 납운돌, 점재, 설론
화암면	화암리	4	화암1리 2리 3리 4리	그림바위, 웃그림바위, 구슬동(큰·작은 구슬동) 미천, 천포, 멧둔지, 싸내 오산, 좌사(양지·음지) 화표동, 큰터, 후원이, 절골
	석곡리	2	석곡1리 2리	억실, 뒤뜰, 수류골, 마덕, 덕거리 상석항, 하석항, बे지름골
	북동리	1	북동리	상북동, 하북동, 월애골, 함바위, 뒷골
	몰운리	2	몰운1리 2리	한치, 되기 몰운, 제동(윗·아랫제동)
	건천리	1	건천리	본동, 큰골, 소일, 송이골
	호촌리	1	호촌리	풍촌, 호명, 어우실
	백전리	2	백전1리 2리	서원기, 정승골, 대지산, 합수거리 노나무골, 한소리, 마당목
남 면	문곡리	3	문곡1리 2리 3리	별어실, 본동(시내), 무른당 탑거리, 점촌, 중간마을, 골말, 상사골, 마차재 자미원, 수리재, 오지구
	무릉리	5	무릉1리 2리 3리 4리 5리	멀미 내자고치, 안자고치, 싸리실, 능전, 덕만, 발구덕 삼거리, 척산 증산(역전) 목산, 정직간
	유평리	2	유평1리 2리	잣마을, 소마평, 아산미, 제기실, 새마을, 매기돌, 능 바위, 양지마을 오름실, 삼내, 고일, 버드내, 한치
	낙동리	3	낙동1리 2리 3리	거칠현, 전개, 수발, 노름골, 창말 괌들, 양지마을, 음지마을, 벳둔, 문두골, 의평 음달(역전), 샘들, 선평
	광덕리	2	광덕1리 2리	수령, 영곡, 광방, 화암, 체운, 석대, 수와우 광탄, 삼중, 송오리, 역전, 갈금, 범소, 서마루
여량면	여량리	5	여량1리 2리 3리 4리 5리	본동 일부, 노고마니, 하곡, 절골 본동 일부 본동 일부, 마산치 본동 일부, 고음동 가금동
	유천리	3	유천1리 2리 3리	송천, 진평, 싸리골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 마평, 궁대, 괴재, 하가재
	구절리	3	구절1리 2리 3리	중동 일부, 하절구, 자개, 떡갈밭 양지마을, 절골, 중앙동 중동 일부, 사달

여량면	남곡리	1	남곡리	고사리, 앞시골, 되골, 북바위, 쇠골
	고양리	1	고양리	임지동, 수무골, 삼가, 큰골, 고창골
	봉정리	1	봉정리	본동, 새치, 발면
북평면	장열리	2	장열1리 2리	본동, 동하지, 바람부리 가평, 하남골
	북평리	6	북평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거무소, 본동(후평), 하동 붉은언덕, 석두 상동 일부 하동 항골, 강선암, 노루목, 아창골, 차랑골, 용소골, 먹골, 약물골 상동 일부
	남평리	3	남평1리 2리 남평3리 (신설)	용바우, 오음동, 신촌, 새마을, 장승백이 다실동, 한대동, 봉화치, 새리골(새을골), 바드란이, 복지골 문화마을, 농촌 휴양 단지
	문곡리	1	문곡리	본동, 큰골, 적은골, 스므골, 백운동
	나전리	2	나전1리 2리	본동, 야미(배미), 어나전(어뢰), 어도원, 할미골, 명지내, 미루니, 윗터골 장평, 다래골, 세미골, 줄평
	숙암리	1	숙암리	우면주(본동), 대지(큰터), 빗발, 단임, 높은터, 깊은터, 메밀굽이, 소나무터, 장재터, 오장동, 우동골, 절골
	가목리	1	가목리	군대, 가목, 명주목이, 부스베리
임계면	도전리	2	도전1리 2리	외도전 내도전, 너래골, 기추목이, 장아리, 아우라지, 사시내골, 매바위
	직원리	2	직원1리 2리	발땃, 군대 일부 구룡동, 노직동, 피원, 당두, 골말, 역마루
	임계리	4	임계1리 2리 3리 4리	점촌, 장성거리, 안검무일부, 관말, 귀새 태봉안, 골말, 도진이, 가슬비 화성, 금방동, 고내 명소, 평양말, 노루마당, 갈마동
	송계리	8	송계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송원, 문둥이골 골말 일부, 웅기장골, 공원묘지골 송계본동 일부 윗말, 고독불 안검무 일부, 신현동(새버리), 골말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소탄, 소메기골, 도수장골, 골말일부
	봉산리	3	봉산1리 2리 3리	송촌, 점구비, 장찬, 안산 본동, 바위안(암내동) 등봉골, 말루, 구미
	낙천리	3	낙천1리 2리 3리	역평, 광산골, 석동거리, 늪밭골, 탑거리, 오목골 일부 미락, 발미락, 사을기 혈천, 오누골
	용산리	2	용산1리 2리	월탄, 햇골, 오목골 일부, 세류골, 명당바위 용동, 돈들(전평), 범정골
	문래리	3	문래1리 2리 3리	양지, 골지본동, 마태골 하동, 감마동 음지마을, 석둔, 세루골, 장터거리

임계면	덕암리	1	덕암리	작은소래, 큰소래, 새이말, 뱃둔골, 구룡동, 무널골, 동무지, 삼베일, 버실이, 위밀이골, 송이재, 장강촌, 공전리
	고양리	1	고양리	적목동, 새이말, 덕치, 수기동, 하승두, 상승두, 고수말이, 하일, 소라곡, 절골, 다래재, 손오거리
	반천리	2	반천1리 2리	성북, 노일, 도장골 일부, 산성, 여우새, 어전, 월루, 덕시

제안이유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인한 이장 정수 변경 필요.

주요내용

행정리 1개리(북평면 남평3리) 신설(별표)

가. 조정 총괄 내역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폐지			
	리	리	리	리	리	리	
합 계	182				증1	183	
정선읍	35					35	
고한읍	20					20	
사북읍	13					13	
신동읍	26					26	
화암면	13					13	
남 면	15					15	
여량면	14					14	
북평면	14	1			증1	15	
임계면	32					32	

나. 조정 세부 내역

- 행정리 : 북평면 남평1리 7반(2가구) 및 8반(58가구) → 남평3리 신설

조 정 전				조 정 후			
리	반명	가구	인구	리	반명	가구	인구
남평1리	1~6	123	249	남평1리	1~6	123	249
남평1리	7	23	43	남평1리	7	21	37
남평1리	8	58	134	남평3리	1~4	60	140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6호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정선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고등학생 및”을 “고등학생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속”을 “계속 근무”로, “고등학교 및”을 “고등학교나”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만, 제2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추천된 경우 제5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때에”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마칠때”를 “마칠 때”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를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u>	<u>정선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u>고등학생</u>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고등학생과</u> ----- ----- -----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u>근속한</u> 사람의 자녀로서 <u>고등학교 및 대학교</u>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 ----- <u>계속 근무</u> ----- ---- <u>고등학교나</u>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선발) (생 략)	제4조(선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다만, 제2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추천된 경우 제5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

이내에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통하여, 대학생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때-----
-----.

② -----
----- 따른 ----- 없
으면 ----- 마칠 때-----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 때-----
-----.

1. ~ 4.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제안이유

이장 자녀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요건을 완화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예외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 신설)

-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도 정원(이장 정수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도 있다.

나.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적용

- 「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정선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

-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250회 정선군의회(2018. 12.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7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으로, “유관기관·단체대표, 이장 및 지역주민중에서 적합한자로”를 “관계 기관·단체대표, 이장이나 지역주민 중 적합한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를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관내”를 “회관 내”로, “임대료등”을 “임대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활용방안강구”를 “활용 방안 강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협의결정”을 “협의 결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로, “당해위원을 해촉”을 “당해 위원을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실한”을 “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손상하는”을 “떨어뜨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교체하여”를 “바꿔”로,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기 위하여”를 “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이” 를 “규칙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여야” 를 “갖춰 두어야” 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내 필요 시설중” 을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둘수” 를 “둘 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장기간” 을 “오랫동안” 으로 한다.

제14조 중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를 “1개월 전에 세워야”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을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1회” 를 “한 차례”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명” 을 “처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령” 으로, “명령” 을 “처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범위안” 을 “범위 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얻어 30일전” 을 “받아 30일 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를 “규정에도” 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부한다” 를 “발급한다” 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반환할” 을 “돌려줄” 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2조 중 “전대하여서는 아니” 를 “다시 대여하여서는 안”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사용기간중” 을 “사용기간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할때에는 사전에” 를 “할 때에는 미리” 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5조 제3항” 을 “제15조제3항”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맞지않” 을 “맞지 않” 으로 한다.

제26조 중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	회 관 명	위 치	비 고
1	고한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2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3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4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5	화암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6	남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7	여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8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9	북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10	임계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u>	<u>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한다.
제4조(구성) ① (생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유관기관·단체대표, 이장 및 지역주민중에서 적합한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위원 중 ----- 관계 기관·단체대표, 이장이나 지역주민 중 적합한 사람을 -----.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⑤제2조의 회관이 소재한 해당지역 정선군의회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제5조(임무) -----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7조(위원의 해촉)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삭 제
3. (생 략)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제9조(회의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

1. 회관 내 -----
- 임대료 등 -----
2. ----- 활용방안 강구
3. ----- 협의 결정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
---- 당해 위원을 위촉을 해제-
-.

1. ----- 잃은 ---

3. (현행과 같음)

4. ----- 떨어
뜨리는 -----

②----- 때는
----- 바뀌 -----

임기의 남은 기간-.

제8조(간사) ①-----
- 하도록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소집) ①----- 규칙에서 -
-----.

②-----
----- 갖춰 두어야 --.

제11조(시설용도) ①-----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생 략)

제13조(관리인) ①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운영) ①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6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할수 있다.

③ · ④ (생 략)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 지역 내 필요시설 중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인) ①-----
----- 둘 수 -----
-----.

②-----
----- . ---- 오랫동안 -----
-----.

제14조(관리계획) -----

----- 1개월 전에 세워야 -----.

제15조(회계 및 운영) ①-----
-----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차례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의 취소등)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 3. (생략)

②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정지 또는 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기준액의 상·하한 각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지역실정, 물가, 시설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1년의 기간으로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결정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생략)

제17조(허가의 취소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처분-----.

1. 관계 법령-----
--- 처분-----.

2. · 3. (현행과 같음)

②-----

----- 않는다.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

----- 범위 안-----

-----.

②-----
----- 받아 30일 전-----.

-----.

③ -----
----- 규정에도 -----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2조(권리양도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생략)

제24조(위탁관리)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

②-----
----- 발급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
----- 않는다. --
----- 각 호의 어느 하나-----
----- 돌려
줄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권리양도등의 제한) -----

----- 다시 대여하여
서는 안 ---.

제2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기간 중 -----

----- . -----
-----.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재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때에는 미리 ----- 받아
야 ----.

③----- 제
15조제3항-----
----- . ----- 맞지
않-----

-----.

제26조(준용)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
다.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근거 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제23조제3항을 삭제하여 법률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안 제2조 별표 1)

-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나. 복지회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조문을 법률에 맞게 개정 (안 제23조)

- 손해배상액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다. 그 밖에 회관의 운영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띄어쓰기를 정비 함.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규 칙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09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단을” 을 “(실·과를” 로 한다.

제2조 중 “실장·과장·소장·단장” 을 “실장·과장·소장”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장·과장·단장” 을 “실장·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과장:” 을 “기획실장·행정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청소년과장·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여성청소년과장·복지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세무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지역경제과장:” 을 “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경제과장·안전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민원봉사과장·안전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을 “민원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제4조 중 “실장·과장·단장” 을 “실장·과장” 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수질환경사업소” 를 “상하수도사업소” 로 한다.

제10조 중 “수질환경사업소” 를 “상하수도사업소” 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8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5호, 제37호, 제39호, 제41호, 제43호 중 “세무회계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⑤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세무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을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로 한다.

⑥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단서,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3조제2항, 제3항, 제36조 전단,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제1항, 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실장”으로 한다.

⑦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⑧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⑨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차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제3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3항,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47조제1항, 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카목, 제7조,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본문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62조제1항 전단, 제69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4항, 제95조, 제124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122조제1항,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세무과장”로 하며, 제3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과 세무회계과장”을 각각 “기획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및 세무회계과장”을 “기획실장 및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으로 한다.

⑩ 정선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세무과장, 민원과장”으로 한다.

⑪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⑫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세무회계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⑬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⑭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⑮ 정선군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⑯ 정선군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⑰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사업소”를 각각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⑱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⑲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 ②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실장”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 을 “안전과장” 으로 한다.
- ② 정선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을 “기획실” 으로 한다.
- ②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을 “기획실” 으로 한다.
- ② 정선군 상징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 을 “기획실”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5호 중 “자치행정과” 를 “행정과” 으로 한다.

[별표 1]

본청 업무분장표(제4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정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 평가 및 심사분석
	4	군정 운영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공약사항 실천관련 업무 전반
	6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7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8	군정보고서·군정백서의 작성 및 발간
	9	각종 지시사항 관리
	10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업무
	11	각종위원회 운영 및 정비 총괄
	12	군의회 운영지원 및 협의
	1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역발전 특화·특구에 관한 사항
	15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총괄
	16	군정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7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18	규제개혁 업무
	19	지방분권 업무
	20	정부 3.0 업무
	21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22	예비비 관리

23	지방채발행,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24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25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지방교부세 관리
27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28	각종 기금의 총괄 관리
29	투·융자,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0	경영수익사업 총괄
31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총괄
32	예산확정 고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33	감사기본계획 수립
34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5	감사 및 직무감찰
36	감사결과 보고, 처분지시와 감사처분사항 이행확인
37	공무원징계의결 요구 및 훈계 처분
38	면책 심의회 운영
39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40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41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도 측정
42	명예감사관제 운영
43	공직자 병역공개
44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45	군정홍보계획수립 및 시행
46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47	청내 방송시설관리
48	홍보매체의 보급 및 육성
49	군보 및 군정소식지 발간
50	정선군 이미지개선회사업(CIP) 및 캐릭터 관리
51	군 법제행정 종합기획
52	자치법규·행정규칙 등 중요문서의 심사
53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4	자치법규의 발간 및 편찬
55	법제사무 지도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56	소송사건의 총괄 및 조정,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7	행정심판 관련사무
58	소청심사 관련사무
59	시책발굴 업무 전반
6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61	지역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사항
62	기초 및 광역발전계획 수립
63	시군 연계협력사업
64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리
65	군정 발전 정책개발 및 시책개발업무
66	서울사무소 운용, 강원도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 연계업무
67	전시공보계획에 관한사항
68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행정과	1	자치행정 사무의 총괄·기획 조정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징계·집행에 관한 사항
	5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7	읍·면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 사무
	9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방행정 동향 및 여론관리
	11	이·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관리
	13	새마을 지도자 관리, 새마을 운동 지원업무
	14	민주평통업무지원
	15	행정사 및 소개영업 지도감독
	16	제도개선 업무
	17	자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19	고객만족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기부금품 모집 통제
	22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23	국·내외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에 관한 사항
	24	견문보고제 운영
	25	주민 반상회 운영
	26	인구 늘리기 시책 운영 총괄
	27	새마을 금고 인가 및 운영관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정 상담위원 관리
	30	공인관리
	31	비밀취급 인가 관리
	32	각종 행사 의전관리
	33	통계조사(인구주택, 산업, 농업, 광공업, 사업체 기초통계 및 고용구조 조사)
	34	통계조사의 종합조정
	35	기본통계의 정비
	36	포상업무
	37	공무원 복무관리
	38	보안업무
	39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40	해외 선진지 견학
	41	국기 및 가로기 관리
	42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리 및 지원
	43	직원 복리증진 사무
	44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무
	45	비정규직 각종 보험에 관한 사항
	46	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사무

	47	직장체육 활동 지원
	48	공무원 동호회 지원
	49	해외선진문화 기행 및 교류
	50	출향단체 관리 및 지원
	51	문서보존 통제 및 문서보존관리
	52	행정지도 발간
	53	정보화 시책에 관한 사항
	54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5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56	지역정보이용센터 운영
	57	군 홈페이지, 웹메일 운영관리
	58	온나라 시스템 운영관리
	59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시설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60	전산보안업무 및 행정전자서명 관리
	61	지방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시행
	62	주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63	자체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64	각종 전산프로그램 보급·운영
	65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 지원
	66	정보화 마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7	본청 및 소속기관의 통신시설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68	통신 보안관리
	69	전자정부 통합망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70	각종 통신회선의 통합관리
	71	행정전화 및 FAX(모사전송)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72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73	데이터 통신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74	정보통신검사 사용전 기술교육
	75	건축허가 관련 통신설계도서 검토
	76	무인당직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7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78	그 밖의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사항과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의 조정
세무과	1	채권 총괄관리
	2	지방세 징수실적 관리 및 세수추계
	3	지방세 전산수납 관리 및 과오납금 결정 처리
	4	지방세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세외수입 관리
	6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 세무상담
	7	비과세 및 감면분 사후관리
	8	부동산 취득세 부과 징수
	9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과 부과·징수
	10	지방세 전산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결정 및 처리
	12	지방세 공시송달
	13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14	자동차세 부과·징수
	15	재산세 부과·징수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16	주민세 부과·징수
	17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18	종합부동산세 자료 지원
	19	재산조화에 관한 사항
	20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업무
	21	과세표준 고시업무
	22	지방세 체납관리
	23	지방세 영수증서 원부관리
	24	지방세 가산금 조정
	25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 조정·통제
	26	지방세 결손처분
	27	지방세 체납처분
	28	그 밖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9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도비 보조금 수입관리
	31	정선군 금고계약 및 지도감독
	32	부가가치세(매출신고및부과납부)
회계과	1	자금운용 및 자금운용 관리감독
	2	자금배정 및 관리
	3	공사·용역·구매 계약 체결
	4	물품 총괄관리(정수책정, 취득, 보관, 전환, 처분)
	5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6	부정당업체 관리
	7	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8	세출예산 집행관리
	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11	유가증권의 수납 보관
	12	급여관리
	13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서 심사
	14	복식회계 기본운영 사무 및 계획 수립
	15	자산관리
	16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자료·검증·수정·보완
	17	세입·세출 복식부기회계처리 및 검증
	18	기초자산, 부채 실사 및 기초가액 평가
	19	복식부기회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	청사관리
	21	영조물 손해보험 가입
	22	관용차량관리
	23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등기에 관한 사항
	24	군유재산 총괄 및 관리
	25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
	26	청사, 관사 및 청내소방시설의 유지관리
	27	부가가치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인)

여성 청소년과	1	가족복지행정의 종합기획
	2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촉진
	3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및 지원
	4	여성단체육성 및 활성화 대책
	5	여성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6	여성 교육, 지원 및 권익증진
	7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8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성별영향 분석 평가
	10	여성단체 사업지원 관리
	11	여성 권익증진 사업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외국인 업무)
	13	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계정) 관리 및 운영
	14	아이돌보미 사업에 관한 사항
	15	성폭력상담소 운영 요보호 여성 보호
	16	결혼소개업소에 관한 사항
	17	공립어린이집 수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8	영육아 보육료 책정 및 보육료 예탁금 관리
	19	유아학비 책정 및 관리
	20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관리에 관한 사항
	21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22	취학전 아동 가정양육수당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3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24	다자녀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학비지원에 관한 사항
	25	저출산 고령화 업무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7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28	보육시설 신고·운영·관리 및 보육료 지원
	2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
	30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 및 관리
	31	아동급식지원 사업
	32	아동복지시설의 지도감독
	33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4	요보호아동 보호 관리
	35	요보호여성 선도보호
	36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7	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및 수련활동 지원
	38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9	청소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0	드림스타트 서비스 기획 및 계획수립
	41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력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43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44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5	드림스타트 신규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관한 사항

	47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및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4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관한 사항
	49	희망의 연못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0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
	51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
	52	사회복지기금(아동계정)관리 및 운영
	53	지역아동센터 및 대철베드로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54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5	향토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 관리
	56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7	지역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58	정선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59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0	평생교육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61	기타 여성·아동·청소년 복지 및 평생학습·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2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
복지과	1	사회복지시책의 수립 추진
	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4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충훈탑 관리 및 현충일 행사
	6	진폐, 생활공감 정책에 관한 사항
	7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
	8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9	주민생활서비스 전산망 구축 및 관리
	10	의사상자 관리
	1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12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13	강원랜드복지재단 지도 감독
	14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관리
	15	사회복지기금 총괄 관리
	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책정
	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리
	18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19	북한이탈 주민관리
	20	자활센터 관리
	21	자활근로사업 운영 관리
	22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희망리본사업
	23	자활기금 사업
	24	의료기금 특별회계 운용
	25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26	행려(부랑인) 보호
	27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28	희망복지 지원
	29	복지허브화 관련 업무
	30	바우처 서비스

	31	재가급식지원 사업
	32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33	통합사례 관리 및 콜센터 운영
	3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35	긴급복지지원사업
	36	대한적십자회 관련 업무
	37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38	자매결연 및 후원사업
	3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40	명절 위문사업
	41	이웃돕기 및 성금모금
	42	전시수용계획 수립·추진
	43	노인복지시설 등록 및 지원
	44	노인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
	45	재가노인 시설 운영
	46	노인복지 기금운용
	47	노인회 지원 및 관리
	48	노인복지 증진 활성화 사업
	49	노인돌봄 서비스
	50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51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52	장사업무 전반
	53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4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55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56	시니어클럽 운영 관리
	57	기타 노인복지 업무 전반
	58	장애인 단체 지원 및 관리
	59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
	60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61	장애인 복지시설 등록 및 지원
	62	기타 노인·장애인·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민원과	1	민원실 설치운영 및 민원공무원 복무기강 지휘 감독
	2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3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평가 및 시책보완·개선
	4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5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운영 관리
	6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호적 등)
	7	인가·허가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지도
	8	민원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9	복합 인·허가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상담
	10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11	국민편의 시책개발
	12	각종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13	여권, 주민등록, 인감, 어디서나 민원, G4C 업무
	14	주민등록관리

	15	주민관리 전산업무 추진
	16	외국인·국내거소자·재외국민 체류지 변경 및 관리
	17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신규등록, 지적복구)
	18	토지이동에 따른 접수 및 정리
	19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0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21	지적측량 파일제공 및 관리
	22	지적측량 성과 검사
	23	지적확정 및 축적·지번변경에 관한 사항
	24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5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정리
	26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27	부동산 관련 특례법 운영·관리
	28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9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30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31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32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사항 조사
	33	부동산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34	부동산실명법 운영
	35	부동산 과세자료 정보제공
	36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37	토지거래 허가관리
	38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
	39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40	토지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관리
	41	외국인 토지관리
	4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43	부동산 소유권 관련 국가소송 수행
	44	개인별 지적전산자료 제공(조상땅 찾기)
	45	지적공부 열람 및 발급
	4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47	건축물 대장발급
	4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9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5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구축·관리
	51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2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
	53	상세주소 부여·관리
	54	국가지점번호 설치·관리
	55	국가기초구역 공동활용 체계 구축·관리
	56	국토지리정보 관련 업무
	57	지적전산자료 제공·관리
	58	지명관리
환경과	1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2	수계·권역별 수질관리 전반

3	맑은 물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4	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보전행사 추진
5	토양오염원 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 수립·추진
6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안전진단 추진
7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환특회계)
8	공해방지
9	환경신문고 운영
10	군립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도립공원에 관한 협의
12	군립공원 지정승인신청 및 군립공원 개발사업
13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14	동강녹색 모험의 숲 개발사업
15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휴식지 관리
16	동강 생태체험 학습지 관리
17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렵장 운영에 관한 사항
19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20	환경경영시스템
21	환경 프로그램 운영(공공기관 배출권 거래,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2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3	지방의제 21 그린스타트 관리
24	환경단체 관리
2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업무
26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27	수질오염총량제
28	수질측정망(지점) 관리
29	생태하천 복원사업
30	비점 오염원 관리
31	특정토양관리대상 시설 인허가
32	유해화학물질 관리
33	실내공기질 및 라돈관리
34	전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5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36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37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8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39	청소행정의 총괄
40	환경미화원 총괄 및 조정관리
41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42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시행
4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4	폐기물관리업무
45	재활용분리수거 및 시책 추진
46	음식물 폐기물 처리
47	국토대청결 운동
48	영농폐기물 수거관리

	49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관리
	50	석면 건축물 관리
	51	잔류성 유기오염물 신고 및 관리
	52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53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54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5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56	생활악취 및 배출시설 관리
	57	매립장 운영관리
	58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9	생활쓰레기 소각로 및 폐열 보일러 유지관리
	60	반입 폐기물 부산물 처리
	61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산림과	1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2	숲 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3	임업분야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4	산림농업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산림기본 통계조사
	6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7	임목벌채허가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관리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9	임도사업, 사방사업
	10	산촌생태마을 조성
	11	산림재해대책, 산림사고 예방
	12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13	임산물 굴·채취 허가
	14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15	산림보호 단속
	16	산림병해충 예방·방제에 관한 사항
	17	등산로 조성 · 정비
	18	산불방지대책 수립 · 실행
	19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0	민동산 역새증식
	21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
	22	보호수 관리
	23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24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25	사방지 지정 및 해제
	26	임업진흥 권역 관리
	27	산림보호구역 관리
	28	공유 임야관리
	29	산악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30	정선알파인스키장 사후활용 대책
	31	산림휴양·레저사업
	32	산림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3	산림자원 활용 대복지원용 양묘사업

문화관광과	1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2	관광객수용 종합대책 추진
	3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추진
	4	관광이벤트 행사 발굴 육성
	5	철도관광사업
	6	관광지 지정·조성·개발
	7	관광시책 발굴·추진
	8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9	관광안내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캠핑장 안전관리
	11	관광홍보물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12	여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14	관광업체의 지도 감독
	15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
	16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17	관광지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18	관광개발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9	관광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관광가이드 운영에 관한 사항
	21	관광통계
	22	백두대간 관광협의체 운영
	23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4	관광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25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시행
	26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사설, 유기기구 및 유기사설업
	27	관광자원 조성 개발
	28	종합캠핑장 조성관리
	29	문화예술 행사
	30	문화예술진흥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31	지역축제 총괄지원
	32	(재)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운영·관리
	33	문화기반시설 확충 운영관리
	34	문화재 및 문화유산관리
	35	문화원 운영관리
	36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38	문화예술단체 관리
	39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타 운영관리
	40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지도·감독
	41	출판사 및 인쇄사 관리
	42	아리랑전수회관 운영·관리
	43	아리랑 전수육성
	44	민속학교 운영
	45	문화재 조사·지정·보수관리
	46	사적 및 기념물 보수관리

	47	전통사찰 관리
	48	문화사업 육성
	49	컴퓨터 게임장 영업의 관리
	5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51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52	관광홍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3	문화관광 해설사
	54	관광기념품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55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56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지원
	57	박물관 및 소장 유물관리
	58	향토민속 육성 지원
	59	종교단체 관리
	60	문화활동지원사업
	61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
	62	문화이용권 관리 운영
	63	정선아리랑 창작예술 및 문화행사 육성지원
	64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운영·관리
	65	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 관리
	66	문화도민 운동
	67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68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관리
	69	정선 친환경 대중 골프장 운영·관리지원
	70	각종 체육대회 유치 참가
	71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관리
	72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3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
	74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75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76	수상 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78	그 밖의 체육진흥 관련 업무
경제과	1	지역경제 동향·분석관리
	2	물가종합대책
	3	공공요금 및 관인요금 관리
	4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5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6	실업대책, 고용촉진훈련사업
	7	취업정보센터 운영
	8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계획 수립·조정
	9	주민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10	민자유치 사업
	11	폐광지역 입주기업 대체산업 융자금
	12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추진
	13	유통소비 업무에 관한 사항
	14	전통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 관련사항

	16	원산지·불법공산품 관리·부정경쟁 방지
	17	정선아리랑 상품권 운영·관리
	18	전통시장 기반시설 및 시설 개·보수
	19	담배 소매인 지정관리
	20	계량기 업무
	21	석공예단지 운영·관리
	22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운영·관리
	23	제조업 및 광업업무에 관한 사항
	24	비축무연탄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6	임대공장 관리 및 개·보수
	27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8	광산 인·허가에 관한 사항
	29	광업권 및 탐사권에 관한 사항
	30	광해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32	지적재산 활성화 지원사업
	33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34	대부업,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35	강원랜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36	3.3 기념사업회 업무
	37	지역공동체 업무 총괄
	38	마을공동체 및 생활문화공동체 관련 사항
	39	일자리안정자금 등 현안 관리
	40	일자리지원 관련 사업 추진
	41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42	마을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43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44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45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46	공산품 품질관리
	47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항
	48	지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9	가스시설공업 및 열관리시설 시공업 등록관리
	50	상거래 질서 계도
	51	석탄품질 관리
	52	수출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통제관 : 안전과장)
	3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일반사항
	5	안전문화 운동 추진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6	안전관련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및 지원
	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8	소방관련 시설 및 의용소방대 지원관리
	9	시설물, 대형사업장 안전관리지도 및 재난 예방

10	특정관리대상물 조사 및 관리업무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시행
13	각종 공연·축제행사 재해 대처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14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관리
1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16	승강기 관련 업무
17	긴급구조·구난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지원
18	군민 안전관련 시책·사업 추진(군민 안전보험 지원 등)
19	도시가스, 화학물질 등 안전점검에 관한 협의
20	사회재난 대응·수습 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사회재난 관련 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22	사회재난 관련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의 장·단기 계획 수립
23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24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25	지역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수립 및 추진
26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및 사회재난 재난지원금 관리
27	재난관련 통신 운영
28	사회재난 상황관리
29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
30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운용관리
31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32	재난관리평가 추진
33	지역안전지수 관리
34	국가 기반보호체계 업무에 관한 사항
35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6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7	인력동원 및 자원조사 관리
38	전시대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 통제
39	충무계획 조정·통제
40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43	통합방위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4	평시 병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5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46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47	자동차 의무보험·자동차 검사·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징수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등록관련 업무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등록관련 업무
50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51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지도감독
52	택시 미터기 검정 업무
53	법령위반 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54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관련 업무
55	교통질서 계도

	56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57	주차장 관련 업무
	58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59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운영
	60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61	케도사업의 허가(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사설, 유기기구, 유기사설업 제외)
	62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
	63	방치차량 및 무보험 차량 관련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업무
	64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관리
	65	공영버스 운행 관리
	66	자동차 정비업·폐차업·매매업의 지도·감독
	67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68	주차장특별회계
	69	그 밖의 교통운수 행정에 관한 업무
건설과	1	사도설치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2	도로점용 허가
	3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시행
	4	도로굴착 승인 및 심의회 운영
	5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6	노상 적치물 관리
	7	접도구역 관리
	8	군도, 농어촌도로 과적차량 단속
	9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업무
	10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11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12	국가 기준점 관리
	13	군도 도로 보수원 관리
	14	위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표지판, 반사경 설치 등)
	15	도로 설해대책
	16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17	철길 건널목 관리
	18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관리
	19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20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 · 시행
	21	마을안길포장사업
	22	도로 유지관리 사업
	23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농로, 오지개발)
	24	하천골재 및 육상골재 인·허가
	25	골재 선별 파쇄업 인·허가
	26	지방·준용하천 인·허가 및 관리
	27	공유수면 인·허가 및 관리
	28	하천·소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29	하천 공작물 인·허가
	30	양어장 인·허가 관리
	31	하천기본계획 수립
	32	소하천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

	33	치수사업 및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34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5	기성제 정비 및 유자관리
	36	하천 댐 관련 사항
	37	하천대상 관리 및 그 밖의 수자원관리상 필요한 사항
	38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관리
	39	비관리청 하천공사
	40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4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42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43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
	44	철도 관련 업무
	45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통제관 : 건설과장)
	46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47	자연재난 위험시설 지구·지정 및 예방사업추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급경사지 등)
	48	자연재난 위험시설 지구 장·단기 계획 수립
	49	자연재난 재난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50	자연재난 피해 복구상황관리, 복구사업비 재배정 및 결산
	51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52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53	수방자재 관리
	54	풍수해 보험 및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관리
	55	지진대비 업무
	56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57	자연재난 상황관리
	58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
	59	우수 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
	6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운영
	61	급경사지 지정 및 관리
	6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시과	1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2	도시 디자인 사업의 종합기획·조정
	3	디자인 정책,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5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6	토지이용규제 KUIS 등재 및 유지관리
	7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입안결정 및 지적고시
	8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9	군계획시설사업 추진 및 관리
	10	도시계획통계,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11	용도지역 지정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운영
	12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13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추진
	14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운영
	15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손실보상
	16	군계획시설의 미불용지 보상

17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
18	골목길 환경 개선 사항
19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1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2	군계획시설 소송(구상권 청구 및 손해업무 추진
23	군계획시설 민원업무 추진
24	군계획시설 개발사업 보상 추진
25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
26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27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28	옥외광고물 관리
29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0	건축물대장 등록·변경
31	건축물 사용승인, 용도변경허가
32	공동주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34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
35	건물동원자원 관리
36	주택융자금 관리
37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3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관리
39	주택조합 설립인가
40	택지조성 사업
41	개발행위 허가
42	경관주택 지원사업
43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승인
44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45	불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46	건축사, 주택건설, 사업자 관리
47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8	농촌주택개량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9	농촌빈집 정보센터 운영
50	재해주택 복구
51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및 상환
52	정선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53	정선군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운영
54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 전반
55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현물)
56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업무

[별표2]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농업축산과	1	농업·농촌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농정시책개발 및 통합조정
	3	농촌활력증진 및 농업인 복지향상통합 조정
	4	정부양곡 수급관리
	5	농촌현장 포럼운영
	6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7	양곡 가공업자 지도관리
	8	융복합 및 자원복합사업 추진
	9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10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운용
	12	농어촌진흥기금관리
	13	발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14	경지정리사업
	15	한해대책
	16	수리시설 관리
	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18	농업용 지하수 관리
	19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21	농지전용 허가(협의)
	22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23	농업진흥지역 및 불법농지 관리
	24	개간지 허가
	25	농지정보화
	26	처분농지관리
	27	한계농지 및 영농조건 불리지역 관리
	28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29	농특산물 직거래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30	농특산물 상표,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관한 사항
	31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농산물집하장의 설치 및 사후관리
	32	농산물 수출정책에 관한 사항
	33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및 안정성 조사
	34	농산물가공업체 지원·사후관리 지도
	35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산물계약재배사업의 시행

36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37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8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39	농산물 선별장 지원사업
40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1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42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43	재해피해 농가 농경지 및 시설물 조사·복구
44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45	친환경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46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47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유통지원(포장재 지원)에 관한 사항
48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면세유 지원에 관한 사항
49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약제 지원에 관한 사항
50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51	종자업, 비료생산업, 농약판매업에 관한 사항
52	야생동물 약제지원사업
53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54	고령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
55	전업농 육성, 관리
56	지역특화 소득원개발사업
57	특산작물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8	과수, 원예분야 생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9	농산물 가공상품화 사업
60	식량작물 재배, 생산지원
61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6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3	축산업 등록에 관한 사항
64	축산경영 안전 추진
65	내수면 자원보호 관리
66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 관리
67	토종 그밖의 가축 육성
68	축산물 유통관리
69	초지관리에 관한 사항
70	축산물작업장 지도감독
71	부정 축산물 단속
72	친환경 축산 직접 지불제
73	축산자금 융자 사후관리
74	가축방역사업

	75	축산시책 및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76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77	축산분뇨 처리사업
	78	학교급식 지원사업
	79	축산재해 안전관리
	80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81	축산물 판매업소 인허가 관리
	82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예찰
	83	공수의 위촉관리
	84	친환경미생물 발효축진제조 시설운영
	85	동물병원·수의 약사 지도 감독
	86	동물약품 판매허가
	87	친환경 학교급식
	88	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
	89	관용차량·청사·재물 등의 재산관리
기술지원과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조정·예산총괄
	2	농촌지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	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농업정보화 업무
	6	농촌지도자회 육성·지도
	7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관리
	8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관리
	9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 관리
	10	4-H 회 육성·지도
	11	농민회 사업 지원 및 관리
	12	생활개선회 육성·지도
	13	강소농 육성 지원
	14	도시농업 육성 및 지도
	15	농업인 전문교육
	16	농촌생활환경 개선
	17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8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도
	19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도
	20	농업인 실용교육(명칭변경)
	21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지도
	22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3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
	2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5	농업인 대학 운영
	26	귀농·귀촌지원사업 및 교육지도
	27	농업인 정보화교육
	28	농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9	농업인 회관 운영·관리
	30	농업인경영상담실, 농업도서실 운영관리
	31	농산물 소득 조사 및 분석
	32	농업경영컨설팅
	33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
	34	농업기계 훈련 및 순회기술교육지원
	35	농업기계 영농지원단 운영
	36	임대 농업기계 유지·관리
	37	농업기계 영농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연구과	1	정부 및 도 보급종 종자 보급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도
	3	전작물 기술 지도
	4	농약안전사용 지도
	5	농업기상 재해관리 지도
	6	친환경농업 육성·지도
	7	특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8	산채류 및 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9	과수재배 기술지도
	10	과수연구사업
	11	과수시범포·소과류 시범포 운영
	12	기후 온난화 대응작목 연구
	13	화훼재배 기술지도
	14	시설원예 기술지도
	15	수출농업 기술지도
	16	양채류재배 기술지도
	17	일반채소재배 기술지도
	18	유용곤충 산업화(추가)
	19	향토음식 및 식품개발 연구
	20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기술지도
	21	특화작목 품질향상 연구
	22	식량작물 생산기술 연구
	23	원예작물 생산기술 연구
	24	특용작물 재배기술 연구
	25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
	26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처방

27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지도
28	지역적응 품질 선발 연구
29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추진
30	농업인 애로기술 지도
31	지역특화품목 육성
32	지역농업특성화
33	신소득작물 개발보급 및 특산품화
34	유전자원 증식기술 개발
35	전통발효 기술연구
36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37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38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
39	농특산물 가공품 연구 및 상품화 지원
40	농특산물 저장기술 연구
41	가공상품 디자인 개발
42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43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44	식품가공실 및 성분분석실 운영
45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46	국가 병해충 관리
47	6차 산업육성 및 지도
48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 및 가공상품화
49	과학영농체험 교육시설 운영
50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
5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47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48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49	식품가공실 및 성분분석실 운영
50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51	국가 병해충 관리
52	6차 산업육성 및 지도
53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 및 가공상품화
54	과학영농체험 교육시설 운영
55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
5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별표 3]

상하수도사업소업무 분장표(제11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상하수도사업소	1	사업소의 예산운영·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
	3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관리
	4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
	5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6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7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8	마을상수도 관리
	9	먹는물 수질검사
	10	먹는물 관리업무 전반
	11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2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운영
	13	지하수 시공업체 관리
	14	지하수 폐공 찾기 및 사후관리
	15	기타 지하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중장기 및 정비기본계획수립 시행
	17	하수관거정비사업
	18	하수도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9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	하수처리시설사업 설계용역 감독
	2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 관리유지
	23	마을하수도 관리 및 수질검사
	24	저수조 관리
	25	전용 상수도 인·허가
	26	상수도 위탁 관리 및 경영평가
	27	청사 및 물품관리
	28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29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부과(조정)
	30	상수도 위탁 지원 및 관리
	31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32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33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34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35	물의 재이용 관리 업무
	36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관리
	37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38	배수설비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39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허가에 관한 사항
	40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
	41	하수도 통계
	42	수질TMS 유지관리
	43	그 밖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별표 4]

읍·면 업무분장표(제13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읍·면	1	서무, 인사, 선거, 보안업무, 직원의 소양(교육)과 복지, 문서관리
	2	통계, 공보, 문화, 예술 및 관광, 문화재 보호관리, 체육행사
	3	기획, 심사분석, 시책업무, 법제, 국민운동 지원
	4	여론, 동향, 각종 지시사항
	5	회계, 물품관리, 국채, 기부금품 통제, 선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국세 위탁징수
	7	군유재산의 관리
	8	사회 및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9	복지허브화 관련 업무
	10	매화장에 관한 사항
	11	청소, 환경관리, 자연보호, 수질보전
	12	제적, 가족관계, 주민등록, 주민전산, 제증명, 인감
	13	외국인등록 주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4	범죄자, 파산자의 대장에 관한 사무
	15	농지, 관정 및 수리시설물 관리, 경지정리, 농토배양, 농기계
	16	수도작, 전작, 특작, 원예, 산림, 잠업, 양정
	17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물가안정, 저축증대
	18	소비자보호, 시장관리, 물가조사.조절, 불량.불법공산품 유통단속
	19	노정업무, 기업체관리, 에너지원 판매업체 지도감독, 운수, 교통
	20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21	건축 및 토목공사, 도로(교량) 및 하천관리, 재해대책
	22	광고물관리
	23	도시계획, 공원, 취락시설 관리, 농촌주택 개량, 기타 지역개발사업
	24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시설자연재해의 방재대책
	25	소규모시설물 관리, 농로
	26	그 밖의 읍·면 소관사무중 재무, 지적, 토지, 복지, 환경, 민원, 산업, 상공, 건설 업무에관한사항
	27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경보체계의 확립
	28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9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30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실·과·단을 말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실·과를 ----- ----- ----- -----.
제2조(직무) 실장·과장·소장·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직무) 실장·과장·소장---- ----- -----.
제3조(직급) 본청 실장·과장·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직급) --- 실장·과장----- -----.
1. 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1. 기획실장·행정과장: ----- -----
2. 여성청소년과장·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여성청소년과장·복지과장: - ----- -----
3. 세무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3. 세무과장·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경제과장·안전과장: -- -----
4. 민원봉사과장·안전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4. 민원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 ----- ----- -----
5. 환경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5.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신 설>

6. · 7. 삭 제

제4조(분장사무) 실장 · 과장 · 단장
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수질환경사업소

제10조(직급) 수질환경사업소에 두
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
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
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6.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제4조(분장사무) 실장 · 과장-----
-----.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

제10조(직급) 상하수도사업소-----

-----.

제안이유

담당 신설·폐지·명칭 및 부서변경 등 군정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조정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청 과장 명칭 변경 및 직급 조정 (안 제3조)

- 세무과장·회계과장·안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건설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환경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산림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나. 사업소 명칭 변경 (안 제10조)

- 수질환경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다. 본청 및 직속기관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1)

- 자치행정과 방위지원 업무 → 안전과 흡수
- 세무회계과 업무 → 세무과, 회계과 분리 이관
- 문화관광과 도서관 업무 → 여성청소년과 흡수
- 환경산림과 업무 → 환경과, 산림과 분리 이관
- 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 업무 → 산림과로 이관
- 올림픽 특구 관리 및 스포츠지원 업무 → 문화관광과 흡수
- 안전건설과 캠핑장 안전관리 업무 → 문화관광과 흡수
- 안전건설과 업무 → 안전과, 건설과 분리 이관
- 철도 관련 업무 → 건설과 신규 분장
- 도시건축과 교통행정·지도 소관 업무 → 안전과 이관
- 농업축산과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농로·오지개발) 업무 → 건설과 흡수
- 골목길 환경 개선 업무 → 도시과 신규 분장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 별	직급 별	직 렬 별	계	본 청	의회사 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629	284	11	118	18	94	10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604	281	11	96	18	94	104
지 도 직			20	0	0	20	0	0	0
연 구 직			4	2	0	2	0	0	0
정 무 직			1	1					
일 반 직	4급	지방서기관	1	1					
	4급·5급	지방서기관·행정사무관	2	2					
		지방서기관·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0						
		지방기술서기관·보건·간호· 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 계	27	12	2	3	1	4	5
		행정	7	5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시설	3	3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공업	1				1		
		행정·농업·사회복지·시 설	5					3	2
		행정·농업·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농업·농촌지도관	1			1			
		의무	1			1			
	6급	소 계	148	72	3	22	5	21	25
		행 정	47	28	3		1	6	9
		세 무	4	4					
		농 업	3			3			
		녹 지	2	2					
		시 설	11	11					
		환 경	2	2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15	5				4	6
		행정·농업	4			1			3
일		행정·녹지	2	2					
		행정·전산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1			1			
		보건·식품위생·간호·의 료기술	1			1			

반 <
--

일 반 직	8급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0						
		기계운영	3				2	1	
		운 전	5	3		1	1		
		사무운영	2	1			1		
		운전·기계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 계	138	64	3	23	6	21	21
		행 정	31	18	1		1	6	5
		세 무	2	2					
		사회복지	9	2				1	6
		전 산	1	1					
		공 업	4	2			2		
		농 업	4			1		2	1
		녹 지	3	3					
		보 건	0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간 호	1			1			
		환 경	3	2			1		
		시 설	17	10			1	4	2
		전산·방송통신	2	2					
		방재안전·환경	2	2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3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0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6		1			4	1
		속 기	1		1				
		소 계	105	38	2	15	1	24	25
		행 정	26	10		1		7	8
		세 무	3						3
		사회복지	13	4				5	4
		공 업	3	2			1		
		농 업	5			2		2	1

일 반 직	9급	녹 지	1	1				
		환 경	2	2				
		보 건	5			5		
		의료기술	1			1		
		시 설	8	5			2	1
		행정·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토목운영	3	3				
		전화상담운영	0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3			1	1	1
		열관리 운영	0					
		운 전	15	3	1	4	3	4
		사무운영	6	2		1	2	1
		시설관리	4		1		1	2
		통신운영·전기운영	0					
		소 계	1	0	0	1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관)	1			1		
지도직	지도직 소계		20	0	0	20	0	0
	4·5급 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5급 상 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0					
	5급상 당	농촌지도관	1			1		
	6급 상당	농촌지도사	18			18		
연구직	연구직 소계		4	2	0	2	0	0
	6급상 당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제안이유

가. 동계올림픽지원단 한시기한 종료에 따른 정원 감원.

나. 지방세, 지적재조사, 신재생에너지, 수질총량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복지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안전·건설·농업·산림·환경 분야 지역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06명 ⇒ 총 629명 (증 23명)

나. 조정내역

○ 분야별 증원 : 27명

(단위 명)

지방세 업무 강화	평생교육 전담인력 보강	여성친화 사업 인력 보강	지적재조사 및 새주소 인력 보강	수질총량제 대비 기능 보강	산림정책 기능 강화	신재생 에너지 인력 보강	안전분야 기능 강화
1명 행5 1	1명 행9 1	1명 행·사복8 1	2명 시(지적)9 2	3명 행·환5 1 환6 1 행9 1	3명 행·녹6 1 행·녹7 1 행9 1	1명 행8 1	1명 행5 1
생활도로 분야 인력 보강	읍면 건설토목 분야 보강	도시재생 기능 강화	친환경농업 인력 보강	치매안심 센터 기능 강화	정신건강 관리 기능 강화	수도시설 인력 보강	맞춤형 복지인력 증원
1명 시6 1	2명 시(토목)9 2	1명 행·시9 1	1명 농6·지도사 1	1명 보건의기 6 1	1명 보건의기 6 1	1명 사·공6 1	6명 행·사복6 5 사복8 1

○ 분야별 감원 : 4명

(단위 명)

계	동계올림픽 청산 종료	비 고
4명	4명	동계올림픽지원단 한시기한 종료

○ 부서별 증원 : 27명

(단위 명)

세 무 과	여 성 청소년과	민원과	환경과	산림과	경제과	안전과
1명 행정5 1	2명 행정·사복8 1 행정9 1	2명 시설9 2	3명 행정·환경5 1 환경6 1 행정9 1	3명 행정·녹지6 1 행정·녹지7 1 행정9 1	1명 행정8 1	1명 행정5 1
건 설 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상하수도 사 업 소	정 선 읍 임 계 면	사 복 읍 화 암 면 남 평 면 북 임 계
1명 시설6 1	1명 행정·시설9 1	1명 농업6·지도사 1	2명 보건·간호·의기6 2	1명 시설·공업6 1	2명 시설9 1 (읍면별 각1)	6명 행정·사복6 5 (읍면별 각1) 사복8 1 (임계)

○ 부서별 감원 : 4명

(단위 명)

계	동계올림픽지원단	비 고
4명	4명	행정·시설5 -1, 행정6 -1, 행정7 -1, 행정8 -1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1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반운영규칙”을 “정선군 반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칭”을 “명칭 및 자연지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측”을 “위측을 해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해 1월중에”를 “다음 해 1월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달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협조사항”을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으로, “반상회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를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알려야”로 한다.

제11조 제목 “(건의사항처리기록)”을 “(건의사항 처리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갖추두고”로,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협조사항등”을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으로,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를 “건의반에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을 “주민”으로, “건의사항처리요령”을 “건의사항 처리요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반의 명칭(자연지명) 및 관할구역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관 할 구 역	
정선읍	봉양 1리	제 1반	정선오일장	【마을】	봉양 1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상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상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상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상동	【마을】	"	제 13반
	"	제 14반	상동	【마을】	"	제 14반
	"	제 15반	상동	【마을】	"	제 15반
	봉양 2리	제 1반	상동	【마을】	봉양 2리	제 1반
			호선역터	【마을】		
			새청거리	【마을】		
			소두둑	【마을】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상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상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상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상동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상동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상동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상동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삼우주택	【마을】	"	제 13반
	봉양 3리	제 1반	중동	【마을】	봉양 3리	제 1반
			배터거리	【마을】		
	"	제 2반	비석거리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중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중동	【마을】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관 할 구 역	
정선읍	봉양 3리	제 6반	중동	【마을】	봉양 3리	제 6반
	"	제 7반	중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중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중동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중동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중동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중동	【마을】	"	제 12반
	봉양 4리	제 1반	하동	【마을】	봉양 4리	제 1반
	"	제 2반	하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하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하동	【마을】	"	제 9반
	봉양 5리	제 1반	녹도	【마을】	봉양 5리	제 1반
	"	제 2반	녹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	【마을】	"	제 6반
	"	제 7반	녹도	【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	【마을】	"	제 8반
	"	제 9반	녹도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녹도	【마을】	"	제 10반
	봉양 6리	제 1반	관음동(觀音洞), 진포리, 탑골, 직벌 의상대, 오리장	【마을】	봉양 6리	제 1반
	"	제 2반	너우라지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송정암(訟停巖)	【바위】	"	제 3반
	"	제 4반	생탄(生呑), 거릿말	【마을】	"	제 4반
	"	제 5반	말바우, 칠성바위	【바위】	"	제 5반
	"	제 6반	역말개	【고개】	"	제 6반
	"	제 7반	동골, 동곡(動谷), 안골	【마을】	"	제 7반
	"	제 8반	굼등, 분부산	【산】	"	제 8반
	"	제 9반	배미골	【골짜기】	"	제 9반
	"	제 10반	누리대, 세대, 회꿈골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골안골, 막골, 지동골	【골짜기】	"	제 11반
	봉양 7리	제 1반	적거리(積巨里)	【마을】	봉양 7리	제 1반, 제 2반
	"	제 2반	향교앞마을	【마을】	"	제 3반
	"	제 3반	정선향교	【향교】	"	제 4반
	"	제 4반	상동나루터	【나루】	"	제 5반
	"	제 5반	적거리	【마을】	"	제 6반
	"	제 6반	상동	【마을】	"	제 7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관 할 구 역	
정선읍	봉양 8리	제 1반	녹도	【마을】	봉양 8리	제 1반
	"	제 2반	녹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	【마을】	"	제 6반
	"	제 7반	녹도	【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	【마을】	"	제 8반
	"	제 9반	녹도	【마을】	"	제 9반
	봉양 9리	제 1반	녹도	【마을】	봉양 9리	제 1반
	"	제 2반	녹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	【마을】	"	제 6반
	"	제 7반	녹도	【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	【마을】	"	제 8반
	봉양 10리	제 1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봉양 10리	제 1반
	"	제 2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봉양주공아파트	【마을】	"	제 7반
	북실 1리	제 1반	북실, 북포동(北寮洞), 용담(龍潭)	【마을】	종전 북실 1리	제 1반
	"	제 2반	북실	【마을】	"	제 2반
	"	제 3반	강원연립	【마을】	"	제 3반
	"	제 4반	북실, 조양산(朝陽山), 남산(南山), 대음산(大陰山), 발봉(髮峰)【산】	【마을】	"	제 4반
	"	제 5반	오암(烏岩)	【마을】	"	제 5반
	"	제 6반	북실	【마을】	"	제 6반
	"	제 7반	태남빌라	【마을】	"	제 7반
	"	제 8반 (신설)	북실마루아파트	【마을】	종전	" 제 1반(북실마루아파트 101동 1~3호라인)
	"	제 9반 (신설)	북실마루아파트	【마을】	종전	" 제 1반(북실마루아파트 101동 4~7호라인)
	"	제 10반 (신설)	북실마루아파트	【마을】	종전	" 제 1반(북실마루아파트 102동 1~4호라인)
	북실 2리	제 1반	오암(烏岩)	【마을】	북실 2리	제 1반
	"	제 2반	울창바우, 채피골, 선들바우골【골짜기】	【마을】	"	제 2반
	"	제 3반	가마실, 삼거리, 넘말, 맹이골, 쥐담골, 코거리, 재, 셋골, 삼부리골, 대장터골, 뽕골, 하골, 모녀이골, 산부금, 하너미, 너툰이재【골짜기】	【마을】	"	제 3반
	"	제 4반	가마실, 삼거리, 넘말	【마을】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관 할 구 역
정선읍	북실 3리	제 1반	울나문배기 【마을】	북실 3리 제 1반
	"	제 2반	윗두독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용담 【마을】	" 제 3반
	"	제 4반	용담, 버드나무배기, 멀근치, 뱅뱅이재, 높동재 【고개】	" 제 4반
	"	제 5반	형방치(丙方峙) 【산】	" 제 5반
	"	제 6반	오암(烏岩) 【마을】	" 제 6반
	"	제 7반	아리랑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아리랑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아리랑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아리랑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아리랑아파트 【마을】	" 제 11반
	북실 4리	제 1반	북실아파트 【마을】	북실 4리 제 1반
	"	제 2반	북실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북실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북실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북실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용담, 싸내, 살개별 【마을】	" 제 6반
	북실 5리	제 1반	현대아파트 【마을】	북실 5리 제 1반
	"	제 2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현대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미소빌아파트 【마을】	" 제 11반
	덕송 1리	제 1반	돌다리 【마을】	덕송 1리 제 1반
	"	제 2반	물등, 꽃두독 【산】	" 제 2반
	"	제 3반	남단골 【마을】	" 제 3반
	"	제 4반	여개 【전답】	" 제 4반
	"	제 5반	방축맥이, 골안 【마을】	" 제 5반
	"	제 6반	사지단골, 청골, 북실매구랑, 갈변지, 미동산 【골짜기】	" 제 6반
	"	제 7반	주배령, 방아재, 부네미 【고개】	" 제 7반
	"	제 8반	내반점(內半點), 지르네미 【마을】	" 제 8반
	"	제 9반	반점재[半點峙], 치물재 【고개】	" 제 9반
	"	제 10반	도두골 【골짜기】	" 제 10반
	"	제 11반	찍어다먹은외, 꽃대봉 【산】	" 제 11반
	"	제 12반	외반점(外半點)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외반점(外半點) 【마을】	" 제 13반
	덕송 2리	제 1반	송오(松五) 【마을】	덕송 2리 제 1반
	"	제 2반	송오(松五) 【마을】	" 제 2반
	"	제 3반	남산(南山) 【마을】	" 제 3반
	"	제 4반	윗채 【고개】	" 제 4반
	"	제 5반	송오나루 【나루】	" 제 5반
	"	제 6반	다래 【마을】	" 제 6반
	"	제 7반	장동, 윗재, 그물목이 【마을】	" 제 7반
	"	제 8반	큰구령 【골짜기】	" 제 8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관 할 구 역
정선읍	애산 1리	제 1반	우묵골【마을】 웃모태이【골짜기】 범바우【바위】 범바우소【소】 철미산(鐵美山), 애산봉【산】 성안【성곽】	애산 1리 제 1반
	"	제 2반	병목【마을】 거리모태이, 아랫모태이【마을】 철미재【고개】 둔덕【산】	" 제 2반
	"	제 3반	엇내【마을】 어천(漁川)【하천】	" 제 3반
	"	제 4반	엇내, 남산밑【마을】 화약고골, 큰골, 작은골【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신촌【마을】	" 제 5반
	"	제 6반	신촌【마을】	" 제 6반
	애산 2리	제 1반	녹도(綠島), 섬버덩, 큰섬, 작은섬, 아랫녹도【마을】	애산 2리 제 1반
	"	제 2반	녹도(綠島)【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綠島)【마을】	" 제 3반
	"	제 4반	역전【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綠島)【마을】	" 제 5반
	"	제 6반	역전【마을】	" 제 6반
	"	제 7반	역전【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綠島)【마을】	" 제 8반
	"	제 9반	녹도(綠島)【마을】	" 제 9반
	"	제 10반	역전【마을】	" 제 10반
	"	제 11반	녹도(綠島)【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신설)	녹도(綠島)【마을】	종 전 " 제 1반(아리채 101동 201, 203~204, 301~604, 102동 201~602)
	"	제 13반 (신설)	녹도(綠島)【마을】	종 전 " 제 1반(아리채 102동 203~604, 103동 201~602)
	애산 3리	제 1반	오반리(五半里), 삼거리, 배나무골, 삼거리【마을】 둔전골, 천담배기골, 느래이골, 장아골, 빈지골, 이슬재골【골짜기】 올창바우【바위】 쇠직산, 느래이말랑, 큰봉【산】	애산 3리 제 1반
	"	제 2반	안질골, 오반동골【골짜기】 쫓재이 고개【고개】 새덕【전답】	" 제 2반
	애산 4리	제 1반	구미동【마을】	애산 4리 제 1반
	"	제 2반	구미동【마을】 느래이골, 방골【골짜기】 정선역【역】	" 제 2반
	"	제 3반	개골, 구암동【마을】 개골나루【나루】	" 제 3반
	"	제 4반	두건이골, 방골【골짜기】 이절【마을】 고사나루【나루】 오전이재【고개】 합금천(合衿川)【하천】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관 할 구 역
정선읍	애산 5리	제 1반	역전 【마을】	애산 5리 제 1반
	"	제 2반	역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綠島)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綠島)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綠島)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綠島) 【마을】	" 제 6반
	신월 1리	제 1반	와평(瓦坪) 【마을】 철미재 【고개】 철산골,한골 【골짜기】	신월 1리 제 1반
	"	제 2반	와평(瓦坪) 【마을】 까칠재 【산】	" 제 2반
	"	제 3반	와평(瓦坪) 【마을】 메내기재 【고개】	" 제 3반
	"	제 4반	와평(瓦坪),드름터 야음대(野陰臺),남산 골매채기재 【마을】	" 제 4반
	신월 2리	제 1반	월통(月通) 【마을】 한재 【고개】 새기골 【골짜기】 양월산(仰月山) 【산】	신월 2리 제 1반
	"	제 2반	월통(月通) 【마을】 송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작은모양골,큰모양골 【마을】 엇재,느진목이 【고개】 국시당이,기우산(祈雨山) 【산】 화상봉 【도로】 칠성백이 【도로】	" 제 3반
	"	제 4반	삼거리,주막거리,안질골 【마을】 새터,자진메기 【산】 박달골,은점골 【골짜기】 지르메재,소재, 쇠재【고개】	" 제 4반
	"	제 5반	새터골 【마을】 가내골,가느골,덕골, 【골짜기】 통골,코거리,어둔골 【고개】 새덕재,문두치(門頭寺) 【전답】 새덕 【산】 감투봉 【산】	" 제 5반
	덕 우 리	제 1반	큰막대촌(大村),잣드루 【마을】 늑운봉,옥순봉,진등 【산】 언내평 【전답】 반선정(伴仙亭) 【정자】 구영소 【소】	덕 우 리 제 1반
	"	제 2반	백우담(白雨潭),백오담(白鳥潭), 박두백우담,버들앗,우금골,웃골, 덕우삼거리,거어리 【마을】 쇠재 【고개】 박달고데이,운금장, 【산】 취적봉(吹笛峰) 【산】	" 제 2반
	"	제 3반	덕산기(德山基),미네미,도사골, 【마을】 도사곡(道土谷),샛말 【산】 웃구진베리,구진베리,웃고개, 【전답】 수리봉,송낙봉 【산】 뤼버덩 【전답】 어르네미골,샛가재미골,큰도사골, 영애골,돌목재골,문안골, 【골짜기】 스무골,맏골 【고개】 서낭고개 【고개】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정선읍	여 탄 리	제 1반	역둔(驛屯),역둔모태이 자드루 【마을】 【전답】	여 탄 리 제 1반
	"	제 2반	동메 노루고개 【산】 【고개】 망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삼거리, 음지말, 양지마을, 화작골, 동막(東幕), 화작동, 중북골, 원터거리 【마을】 가미봉, 무른재 【산】 조아골, 크사태골, 분태골, 둔지골, 큰노골, 작은중북골, 앞골, 한길네미 【골짜기】 양지말 【전답】 큰재, 마치(馬峙), 치재, 늘골네미 【고개】	" 제 3반
	"	제 4반	삼거리, 음지말, 양지마을, 화작골, 동막(東幕), 화작동, 중북골, 원터거리 【마을】	" 제 4반
	회동 1리	제 1반	다래들, 월평(月坪) 【마을】 【산】 달구릉, 안골 【골짜기】 【고개】 동산재, 범바우재	회동 1리 제 1반
	"	제 2반	다래들 【마을】 앞산 【산】 다래위 【전답】 아홉사리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다래들 【마을】	" 제 3반
	"	제 4반	다래들 【마을】	" 제 4반
	회동 2리	제 1반	음지마을 【마을】	회동 2리 제 1반
	"	제 2반	음지마을 【마을】 답덕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양짓말 【마을】	" 제 3반
	"	제 4반	양짓말 【마을】 새두지 【전답】 뒷골 【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양짓말 【마을】	" 제 5반
	"	제 6반	청랑골, 어귀, 새판, 늑평, 막동 해수터, 말목이 【마을】 새골, 세곡(細谷), 어은골, 바른골 덕문골, 지레이골 【골짜기】 사신골 【산】 안덕, 가리왕산 면파령(靑波嶺) 【고개】 말목이재	" 제 6반
용탄 1리	제 1반	귀리벌 【마을】	용탄 1리 제 1반	
	"	제 2반	노미, 머구숲 【마을】 【골짜기】 새가산 【산】 범여울 【여울】	" 제 2반
	"	제 3반	안말, 삼거리 【마을】 안말, 나루 【나루】	" 제 3반
	"	제 4반	구재, 새마을 【마을】	" 제 4반
	"	제 5반	가느골 【마을】 안배미골 【골짜기】 매골재 【산】	" 제 5반
	"	제 6반	골어구 【마을】 박달재 【산】	" 제 6반
	"	제 7반	비룡동(飛龍洞) 【마을】 【고개】 오두치 【골짜기】 주리봉 【산】 탑거리 【도로】	" 제 7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정선읍	용탄 1리	제 8반	실룬, 어용골 【마을】	" 제 8반
	용탄 2리	제 1반	벽탄(碧灘), 넘마을 【마을】 돌고지 【산】 노루머리 【고개】 고갯재 【마을】	용탄 2리 제 1반
	"	제 2반	벽탄(碧灘), 벽탄역터 【마을】	" 제 2반
	"	제 3반	다래들 【마을】 새덕골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다래들 【마을】 지름재 【고개】	" 제 4반
	용탄 3리	제 1반	터골 【마을】 갱금산, 농딩이 【산】 자랑골, 도애골 【골짜기】 도태골 【마을】	용탄 3리 제 1반
	"	제 2반	주막거리 【마을】 샛골, 옷나무골 【골짜기】 큰성마령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거리마을, 행매동(行邁洞), 원골 【마을】 행매원(行邁院) 【골짜기】 샛골, 왕태골 【마을】 작은성마령골 【고개】 운고개 【마을】 성마령(星摩嶺) 【고개】	" 제 3반
	"	제 4반	안마을 【마을】 아홉사리, 까치고개 【고개】	" 제 4반
	광하 1리	제 1반	광석(廣石) 【마을】 광석나루 【나루】	광하 1리 제 1반
	"	제 2반	군언, 모마루 【마을】 버들치 【고개】 도깨비굴 【동굴】 열두절, 수기대 【하천】	" 제 2반
	"	제 3반	우뚜르 【마을】	" 제 3반
	"	제 4반	송단(松丹), 재룬골 【마을】	" 제 4반
	"	제 5반	송단(松丹), 재룬골 【마을】	" 제 5반
	광하 2리	제 1반	앞골, 빈지막, 세집맹이 【마을】 상산 【산】	광하 2리 제 1반
	"	제 2반	망하(望河) 【마을】 방뒤산, 새덕산 【산】	" 제 2반
	"	제 3반	망하(望河) 【마을】 양치재 【고개】	" 제 3반
	광하 2리	제 4반	여곡(余谷), 양지마을, 음달터 【마을】 남은골 【산】 노적봉, 덕새, 목재 【고개】 살개봉 【골짜기】 자운치, 새재 【마을】 때울, 방골 【마을】	광하 2리 제 4반
	"	제 5반	소탄(召呑) 【마을】 웃골, 무난골 【골짜기】 대목골 【도로】 내멜지랭이 【마을】	" 제 5반
	"	제 6반	마전골, 도장골, 고라데이골 【골짜기】 산지골, 밤나무골 【마을】 마전(麻田) 【둔지】 새덕 【마을】 마전령(麻田嶺) 【고개】 비행기재 【고개】	" 제 6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정선읍	굴 암 리	제 1반	상굴화(上橘花) 개금벌 개금골망골	굴 암 리
	"	제 2반	상굴화(上橘花) 뒷덕마산 상정바우골	"
	"	제 3반	하굴화(下橘花) 개바우 장구매기 진등 굴화나루터	"
	"	제 4반	옷바우 수리봉, 나팔봉 큰골, 서누래【골짜기】 양치(楊峙)	"
	"	제 5반	새덕골 동무지(童舞地) 설피골, 마천이골, 나발골, 달개골, 제당골 동무지재	"
	"	제 6반	옷만지산, 아랫만지산, 새막이덕우리 만지산(萬支山) 배나무골, 느태골, 안둠새이, 바깥둠새이 피골 솔미기	"
	가 수 리	제 1반	수미【水旆】 수미나루 납닥소 붉은병, 말짖베리 오송악(五松峯) 산자골	가 수 리
	"	제 2반	수미【水旆】, 갈매, 구수매기, 갈매동우리 물밀동우리 너툰이재 굴거리재 문안골, 그물매기 회침이골 지장천(地藏川)【하천】 가둔지 황마루, 갈미벌 안동우리 갈미소	"
	"	제 3반	북대(北垓) 운고개 어선골【漁船谷】, 가느골 다래골 도둑구지 산지기	"
	"	제 4반	가탄(佳灘), 옷말, 아랫말, 사터, 유지(有池) 노장골, 큰싸리밭골, 수령이골 가탄나루 달구봉, 유지등, 예봉 포부랑재, 트리재 유지구덩	종 전
	"	제 5반	해매, 둔지마을 해매나루 느산맥이돌개【산】 삼형재바우 수갈령골	종 전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고한읍	고한 1리	제 1반	만항 함백산(咸白山) 【마을】 【산】	고한 1리 제 1반
	"	제 2반	만항, 평화촌 【마을】 만항재, 능목재 【고개】 제당골, 강동재, 산막골, 쥐정골, 【골짜기】 숨골, 적남골 【산】 뽕죽산	" 제 2반
	고한 2리	제 1반	두문동(杜門洞), 【마을】 대두문동	고한 2리 제 1반
	"	제 2반	대두문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대두문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두문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두문동 【마을】 두문동재 【고개】 두문동재터널 【터널】 금대봉(金臺峯), 【산】 천의봉(天倚峯)	" 제 5반
	고한 3리	제 1반	소두문동(小杜門洞) 【마을】 마당목 【고개】 큰골, 너실목 【골짜기】	고한 3리 제 1반
	"	제 2반	자레바우, 소두 【마을】 교틀재 【고개】	" 제 2반
	"	제 3반	싸리덕 【골짜기】	" 제 3반
	고한 4리	제 1반	박심마을 【마을】	고한 4리 제 1반
	"	제 2반	박심, 삼봉(三峯), 【마을】 성황당마을 【성황당】 국시당 【고개】 팍심이재, 박심고개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고한읍	고한 5리	제 1반	상갈래	【마을】	고한 5리	제 1반
	"	제 2반	상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절골	【마을】	"	제 3반
	"	제 4반	스카이빌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삼거리	【마을】	"	제 5반
	"	제 6반	절골아래	【마을】	"	제 6반
	고한 6리	제 1반	삼거리	【마을】	고한 6리	제 1반
	"	제 2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3반
	"	제 4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4반
	"	제 5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5반
	"	제 6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6반
	"	제 7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7반
	"	제 8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8반
	고한 7리	제 1반	중갈래	【마을】	고한 7리	제 1반
	"	제 2반	중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갈래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고한 8리	제 1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고한 8리	제 1반	
	" 제 2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고한주공아파트	【마을】	" 제 11반		
고한 9리	제 1반	대원아파트	【마을】	고한 9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마을,고한연립주택, 당목,웃당목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갈래	【마을】	" 제 3반		
	" 제 4반	중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중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중갈래	【마을】	" 제 6반		
고한 10리	제 1반	역전	【마을】	고한10리	제 1반	
	" 제 2반	역전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역전	【마을】	" 제 3반		
	" 제 4반	역전	【마을】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고한읍	고한 11리	제 1반	막골	【마을】	고한11리	제 1반
	"	제 2반	막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막골 꽃대봉, 백운산	【마을】 【산】	"	제 3반
	고한 12리	제 1반	하갈래	【마을】	고한12리	제 1반
	"	제 2반	하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갈래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고한 13리	제 1반	하갈래	【마을】	고한13리	제 1반
	"	제 2반	하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범소(範小)마을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갈래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갈래	【마을】	"	제 7반
	"	제 8반	하갈래	【마을】	"	제 8반
	고한 14리	제 1반	고토일(古土日), 웃마을, 큰고들, 골마을, 참배나무골, 마당목이 마당목재, 뒷재, 두일재, 갈래재, 소두문동재	【마을】 【고개】	고한14리	제 1반
	"	제 2반	아랫말, 지름터, 음달모태이 목지넘이	【마을】 【고개】	"	제 2반
	"	제 3반	작은고토일 송개이재 우암산	【마을】 【고개】 【산】	"	제 3반
	"	제 4반	고토일	【마을】	"	제 4반
	"	제 5반	고토일	【마을】	"	제 5반
	"	제 6반	고토일	【마을】	"	제 6반
	고한 15리	제 1반	진밭골, 싸리덕	【마을】	고한15리	제 1반
	"	제 2반	부금소, 신적, 살갈매기, 삼봉골	【마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못골, 지곡(池谷), 못골아파트 철골	【마을】 【마을】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적조암(寂照庵), 정암사(淨岩寺)	【사찰】	"	제 4반
	"	제 5반	적조암(寂照庵), 정암사(淨岩寺)	【사찰】	"	제 5반
	고한 16리	제 1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등마을	【마을】 【마을】	고한16리	제 1반
	"	제 2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강원랜드 사원아파트	【마을】	"	제 5반	
고한 17리	제 1반	구사택, 양지마을.		고한17리	제 1반	
"	제 2반	하당목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갈래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고한읍	고한 17리	제 4반	하갈래	【마을】	고한17리	제 4반
	"	제 5반	하갈래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갈래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갈래	【마을】	"	제 7반
	고한 18리	제 1반	아랫시장	【마을】	고한18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시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랫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시장	【마을】	"	제 4반
	"	제 5반	아랫시장	【마을】	"	제 5반
	"	제 6반	아랫시장	【마을】	"	제 6반
	"	제 7반	아랫시장	【마을】	"	제 7반
	"	제 8반	아랫시장	【마을】	"	제 8반
	고한 19리	제 1반	웃시장	【마을】	고한19리	제 1반
	"	제 2반	웃시장	【마을】	"	제 2반
	"	제 3반	웃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웃시장	【마을】	"	제 4반
	"	제 5반	웃시장	【마을】	"	제 5반
	"	제 6반	웃시장	【마을】	"	제 6반
	"	제 7반	웃시장	【마을】	"	제 7반
	고한 20리	제 1반	고한아파트	【마을】	고한20리	제 1반
	"	제 2반	고한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고한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해피아리아파트	【마을】	"	제 8반
사북읍	직전리	제 1반	무널	【마을】	직전리	제 1반
	"	제 2반	불당골, 감재골, 사양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피내, 담뒤, 주막거리, 사부랭이골 서원기골	【마을】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발전(鉢田), 먼지골 덧이마 빨딱고개	【마을】 【산】 【고개】	"	제 4반
	"	제 4반	발전(鉢田), 비릿, 노목산(櫓木山) 고부산(高釜山) 마밭이재, 말고개재 큰들	【마을】 【산】 【고개】 【골짜기】	"	제 4반
	사북 1리	제 1반	범바위골	【마을】	사북 1리	제 1반
	"	제 2반	범바위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범바위골	【마을】	"	제 3반
	"	제 4반	범바위골	【마을】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사북읍	사북 1리	제 5반	범바위골	【마을】	사북 1리	제 5반
	"	제 6반	범바위골	【마을】	"	제 6반 (대림아파트 가동)
	"	제 7반	범바위골	【마을】	"	제 7반 (대림아파트 나동)
	"	제 8반	범바위골 범바위	【마을】 【바위】	"	제 8반 (하이랜드빌리지 5동)
	"	제 9반	범바위골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범바위골	【마을】	"	제 10반 (영동아파트 3동·4동)
	"	제 11반	범바위골	【마을】	"	제 11반
	사북 2리	제 1반	사북아파트	【마을】	사북 2리	제 1반 (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1호~505호)
	"	제 2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2반 (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101호~505호)
	"	제 3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13반
	"	제 14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4반
	"	제 15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15반
	"	제 16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16반 (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6호~510호)
	"	제 17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제 17반 (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106호~510호)
	사북 3리	제 1반	아랫사북	【마을】	사북 3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랫사북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아랫사북	【마을】	"	제 5반
	"	제 6반	아랫사북	【마을】	"	제 6반
	"	제 7반	아랫사북	【마을】	"	제 7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사북읍	사북 4리	제 1반	아랫사북	【마을】	사북 4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랫사북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아랫사북	【마을】	"	제 5반
	사북 5리	제 1반	골말	【마을】	사북 5리	제 1반
	"	제 2반	골말	【마을】	"	제 2반
	"	제 3반	골말	【마을】	"	제 3반
	"	제 4반	골말	【마을】	"	제 4반
	"	제 5반	골말	【마을】	"	제 5반
	"	제 6반	골말	【마을】	"	제 6반
	"	제 7반	골말	【마을】	"	제 7반
	"	제 8반	골말	【마을】	"	제 8반
	"	제 9반	골말	【마을】	"	제 9반
	"	제 10반	골말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골말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골말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골말	【마을】	"	제 13반
	"	제 14반	골말	【마을】	"	제 14반
	"	제 15반	골말	【마을】	"	제 15반
	"	제 16반	골말	【마을】	"	제 16반
	"	제 17반	골말	【마을】	"	제 17반
	"	제 18반	골말	【마을】	"	제 18반
사북읍	사북 6리	제 1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사북 6리	제 1반
	"	제 2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주공사북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도사곡	【마을】	"	제 10반
	사북 7리	제 1반	소잡는골	【골짜기】	사북 7리	제 1반
	"	제 2반	말개이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윗사북	【마을】	"	제 3반
	"	제 4반	윗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윗사북	【마을】	"	제 5반
	"	제 6반	윗사북	【마을】	"	제 6반
	사북 7리	제 7반	윗사북	【마을】	사북 7리	제 7반
	"	제 8반	윗사북	【마을】	"	제 8반
	"	제 9반	윗사북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윗사북	【마을】	"	제 10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사북읍	사북 8리	제 1반	시장	【마을】	사북 8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시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랫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역전 안경다리	【마을】	"	제 5반
	"	제 6반	역전	【마을】	"	제 6반
	"	제 7반	역전	【마을】	"	제 7반
	"	제 8반	역전	【마을】	"	제 8반
	"	제 9반	시장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시장	【마을】	"	제 10반
	사북 9리	제 1반	아랫사북	【마을】	사북 9리	제 1반
	"	제 2반	아랫사북	【마을】	"	제 2반
	"	제 3반	선명오피스텔	【마을】	"	제 3반
	"	제 4반	선명오피스텔	【마을】	"	제 4반
	"	제 5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5반
	"	제 6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6반
	"	제 7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7반
	"	제 8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8반
	"	제 9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 12반
	사북 10리	제 1반	윗사북	【마을】	사북10리	제 1반
	"	제 2반	마름터	【마을】	"	제 2반
	"	제 3반	윗사북	【마을】	"	제 3반
	"	제 4반	윗사북	【마을】	"	제 4반
	"	제 5반	윗사북	【마을】	"	제 5반
	"	제 6반	윗사북	【마을】	"	제 6반
	"	제 7반	윗사북	【마을】	"	제 7반
	사북 11리	제 1반	단문지	【마을】	사북11리	제 1반
	"	제 2반	남명이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논들재 천나무골, 정지발골, 안골안	【골짜기】	"	제 3반
			북일평지마을, 공전 사북면모듬골, 마음골, 노른배골	【마을】		
			화적봉	【산】		
	사북 12리	제 1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사북12리	제1반(정선산수빌임 대아파트101동201호 ~1503호)
	"	제 2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2반(정선산수빌임 대아파트102동201호 ~1004호)
	"	제 3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3반(정선산수빌임 대아파트103동101호 ~1403호)
	"	제 4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4반(정선산수빌임 대아파트105동201호 ~902호)
	"	제 5반	선명소라파크	【마을】	"	제5반(정선산수빌임 대아파트106동201호 ~1502호)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신동읍	예미 1리	제 1반	의림길, 비석거리	예미 1리	제 1반
	"	제 2반	창가산	"	제 2반
	"	제 3반	의림길	"	제 3반
	"	제 4반	의림길	"	제 4반
	"	제 5반	의림길	"	제 5반
	"	제 6반	의림길	"	제 6반
	예미 2리	제 1반	유문동(柳門洞),	예미 2리	제 1반
	"	제 2반	광관	"	제 2반
	"	제 3반	신발골	"	제 3반
	"	제 4반	애목재	"	제 4반
	"	제 5반	유문동	"	제 5반
	"	제 6반	작은부발골, 큰부발골,	"	제 6반
	"	제 7반	큰부발골	"	제 7반
	"	제 8반	주리동	"	제 8반
	"	제 9반	유문동, 괴그무골	"	제 9반
	"	제 10반	달구매, 큰구지,	"	제 10반
	"	제 11반	용골	"	제 11반
	"	제 12반	구라가재, 고성만재	"	제 12반
	"	제 13반	고성터널	"	제 13반
	예미 3리	제 1반	의림길	예미 3리	제 1반
	"	제 2반	의림길, 장터거리	"	제 2반
	"	제 3반	공원산	"	제 3반
	"	제 4반	의림길	"	제 4반
	"	제 5반	의림길	"	제 5반
	"	제 6반	장소(裝沼)	"	제 6반
	예미 4리	제 1반	배영거리	예미 4리	제 1반
	"	제 2반	새물보	"	제 2반
	"	제 3반	노일(魯日)	"	제 3반
	"	제 4반	재건촌	"	제 4반
	"	제 5반	노일	"	제 5반
	"	제 6반	노일	"	제 6반
	"	제 7반(신설)	노일	"	제 7반
	"	제 8반(신설)	노일	"	제 8반
	예미 5리	제 1반	노일	예미 5리	제 1반
	"	제 2반	노일	"	제 2반
	"	제 3반	노일	"	제 3반
	"	제 4반	노일	"	제 4반
	"	제 5반	용주골	"	제 5반
	"	제 6반	예미산(禮美山)	"	제 6반
	예미 6리	제 1반	역전	예미 6리	제 1반
	"	제 2반	예미역	"	제 2반
	"	제 3반	역전	"	제 3반
	"	제 4반	역전위	"	제 4반
	"	제 5반	역전위	"	제 5반
	"	제 6반	모란고지	"	제 6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신동읍	예미 7리	제 1반	납돌(納洞), 큰앞길 걸등이골	예미 7리 제 1반 【마을】 【골짜기】
	"	제 2반	납돌 갸골, 소골, 범골	" 제 2반 【마을】 【골짜기】
	"	제 3반	의림길 건다이	" 제 3반 【마을】 【전답】
	천 포 리	제 1반	골마을, 안골 안재, 뒷재 물방이골	천 포 리 제 1반 【마을】 【고개】 【골짜기】
	"	제 2반	용가들	" 제 2반 【마을】
	"	제 3반	곡기리(曲吉) 곧은골	" 제 3반 【마을】 【골짜기】
	"	제 4반	오리터	" 제 4반 【고개】
	"	제 4반	원천포(元泉浦), 양지마을, 용가, 서들굴이 밭재	" 제 4반 【마을】 【둔덕】
	"	제 4반	주막거리, 잠대거리 지실골	" 제 4반 【거리】 【골짜기】
	"	제 4반	온천지기, 박죽등	" 제 4반 【산】
	"	제 5반	원천포(元泉浦) 곧은골	" 제 5반 【마을】 【골짜기】
	조동 1리	제 1반	길운(吉雲)	조동 1리 제 1반 【마을】
	"	제 2반	길운(吉雲), 덕말	" 제 2반 【마을】
	"	제 3반	길운 절골	" 제 3반 【마을】 【골짜기】
	조동 2리	제 1반	길운	조동 2리 제 1반 【마을】
	"	제 2반	골안	" 제 2반 【마을】
	"	제 3반	골안	" 제 3반 【마을】
	"	제 4반	안길운 염묘산(連墓山)	" 제 4반 【마을】 【산】
	"	제 5반	안길운 개비덕 뱃재	" 제 5반 【마을】 【언덕】 【고개】
	조동 3리	제 1반	개미촌 간이역	조동 3리 제 1반 【마을】 【역】
	"	제 2반	구룡동	" 제 2반 【마을】
	"	제 3반	구룡동	" 제 3반 【마을】
	"	제 4반	구룡동	" 제 4반 【마을】
	"	제 5반	구룡동	" 제 5반 【마을】
	"	제 6반	구룡동	" 제 6반 【마을】
	"	제 7반	구룡동	" 제 7반 【마을】
	조동 4리	제 1반	시장 수리봉	조동 4리 제 1반 【마을】 【산】
	"	제 2반	시장	" 제 2반 【마을】
	"	제 3반	시장	" 제 3반 【마을】
	"	제 4반	시장	" 제 4반 【마을】
	"	제 5반	시장	" 제 5반 【마을】
	"	제 6반	시장	" 제 6반 【마을】
	조동 5리	제 1반	시장 새목이	조동 5리 제 1반 【마을】 【고개】
	"	제 2반	시장	" 제 2반 【마을】
	"	제 3반	유신촌(維新村)	" 제 3반 【마을】
	"	제 4반	중앙(中央) 상여골	" 제 4반 【마을】 【골짜기】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신동읍	조동 6리	제 1반	새골,계장사택 새매골,살개골, 다래골 개간지 【마을】 【골짜기】 【전답】	조동 6리 제 1반
	"	제 2반	새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새골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새골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재피골 【마을】	" 제 5반
	"	제 6반	재피골 【마을】	" 제 6반
	"	제 7반	벌밭,벌밭과장사택 애매골,부대골 【마을】 【골짜기】	" 제 7반
	"	제 8반	밭은밭 【마을】 【골짜기】	" 제 8반
	조동 7리	제 1반	용화동 【마을】	조동 7리 제 1반
	"	제 2반	용화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용화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용화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용화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모닥불 【마을】	" 제 6반
	"	제 7반	모닥불,점촌,응달마을, 양지마을 대전길 【마을】 【고개】	" 제 7반
	조동 8리	제 1반	안경다리 【마을】	조동 8리 제 1반
	"	제 2반	안경다리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안경다리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안경다리 【마을】	" 제 4반
	"	제 5반	방아소 【마을】 【호】	" 제 5반
	조동 9리	제 1반	길운(吉雲) 【마을】	조동 9리 제 1반
	"	제 2반	길운(吉雲) 【마을】	" 제 2반
	"	제 3반	길운(吉雲) 【마을】	" 제 3반
	"	제 4반	길운(吉雲) 사스래골 방충매기 【마을】 【골짜기】 【도로】	" 제 4반
	방제 1리	제 1반	장재덕 다래산 【마을】 【호】	방제 1리 제 1반
	"	제 2반	미륵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역전(驛前),웃덕감배기 미륵골 함백역(咸白驛) 덕쇠 【마을】 【골짜기】 【역】 【전답】	" 제 3반
	"	제 4반	아랫방제,둔박골【마을】	" 제 4반
	"	제 5반	웃방제,매화동(梅花洞) 만평짜리 수리재,새덕재 고무골 【마을】 【전답】 【고개】 【골짜기】	" 제 5반
	"	제 6반	웃방제,매화동(梅花洞) 【마을】	" 제 6반
	방제 2리	제 1반	새빛재 설령,안터 단곡(檀谷),마곡 【고개】 【마을】 【골짜기】	방제 2리 제 1반
	"	제 2반	새빛재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새빛재 【마을】	" 제 3반
	"	제 4반	돌강촌 찰운산 【마을】 【호】	" 제 4반
	"	제 5반	돌강촌 찰운산 【마을】 【호】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신동읍	가 사 리	제 1반	원가사(元佳士)	【마을】	가 사 리	제 1반
	"	제 2반	원가사(元佳士) 고재골,막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두리골,남애(南峯)	【마을】	"	제 3반
	"	제 4반	머드레이,피실 항정골	【마을】 【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마차(磨差) 마산등,곰봉(熊峰) 동점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5반
	고성 1리	제 1반	벌말(坪丘),고림(古林) 복실골,큰골,작은골, 터덕골 고고산(高古山) 미구재(美九峙)	【마을】 【골짜기】 【산】 【고개】	고성 1리	제 1반
	"	제 2반	고림(古林)	【마을】	"	제 2반
	"	제 3반	벌말(坪丘)	【마을】	"	제 3반
	"	제 4반	수천(水峯),큰골	【골짜기】	"	제 4반
	고성 2리	제 1반	새나루(新津) 덧재	【마을】 【고개】	고성 2리	제 1반
	"	제 2반	창마일(內倉),뒤실 요골 덕새 뒷덕 꽃대봉	【마을】 【골짜기】 【둔덕】 【전답】 【산】	"	제 2반
	"	제 3반	자르메(桺山)	【마을】	"	제 3반
	"	제 4반	고방(古芳) 큰머골 성재(城峙),나리재, 당목이재	【마을】 【골짜기】 【고개】	"	제 4반
	덕 천 리	제 1반	덕내 뒤실	【마을】 【골짜기】	덕 천 리	제 1반
	"	제 2반	덕내 무랑골재,물레재,큰재	【마을】 【고개】	"	제 2반
	"	제 3반	골덕내,제장(堤場), 소골(所洞) 소동나루 산개골,돌재골 칠족령(七足嶺) 배비랑산 나리소,바리소,하방소	【마을】 【나루】 【골짜기】 【고개】 【산】 【소】	"	제 3반
	"	제 4반	바새	【마을】	"	제 4반
	"	제 5반	연포(硯浦)	【마을】	"	제 5반
	"	제 6반	칼봉 거부기(龜浦)	【산】 【마을】	"	제 6반
	운 치 1리	제 1반	돈니치(敦泥峙)	【마을】	운 치 1리	제 1반
	"	제 2반	돈니치(敦泥峙) 샘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돈니치(敦泥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돈니치(敦泥峙) 은골(銀谷)	【마을】 【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기일(基日) 말구리재, 남애재(南崖峙)	【마을】 【고개】	"	제 5반
	"	제 6반	터골(碁谷) 문발재,새재	【골짜기】 【고개】	"	제 6반
	운 치 2리	제 1반	점치 점치나루터 병목 백운산(白雲山)	【마을】 【나루터】 【고개】 【산】	운 치 2리	제 1반
	"	제 2반	번들,평창마을 독지	【마을】 【분지】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신동읍	"	제 3반	수동(水洞) 수갈령재, 구름재 범에굴 용침지 밭골 수동나루 용바우	【마을】 【고개】 【동굴】 【골짜기】 【나루터】 【바위】	"	제 3반
	운치 3리	제 1반	납운돌(納雲洞), 갈벌	【마을】	운치 3리	제 1반
	"	제 2반	대말[大村] 탑서낭당이 얼음굴	【마을】 【성황당】 【동굴】	"	제 2반
	"	제 3반	설론(雪論), 고말, 독지골 노루메	【마을】 【고개】	"	제 3반
화암면	화암 1리	제 1반	아래그림바위[下畵岩]	【마을】	화암 1리	제 1반
	"	제 2반	아래그림바위[下畵岩]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래그림바위[下畵岩]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래그림바위[下畵岩]	【마을】	"	제 4반
	화암 1리	제 5반	위그림바위[上畵岩], 아래그림바위[下畵岩] 거북바위[龜岩], 화표주	【마을】 【바위】	화암 1리	제 5반
	"	제 6반	구슬동(九瑟洞), 원터[院基], 작은구슬동, 텃개 약수골, 샘골 화암약수(畵岩藥水), 쌍약수 뒹골	【마을】 【골짜기】 【약수】 【고개】	"	제 6반
	"	제 7반	큰구슬동 금지기골, 풀미당골, 송산골, 도장골 미사리재 천파랭이굴	【마을】 【골짜기】 【고개】 【동굴】	"	제 7반
	화암 2리	제 1반	천포(泉浦), 솔무데기, 새골들 화암동굴 큰골 쌍봉	【마을】 【동굴】 【골짜기】 【산】	화암 2리	제 1반
	"	제 2반	싸내[米川] 싸내들	【마을】 【전답】	"	제 2반
	"	제 3반	윗둔지 느즈목골, 신발골, 점불 살구재, 군의산 용마소(龍馬沼)	【마을】 【골짜기】 【산】 【소】	"	제 3반
	화암 3리	제 1반	양지좌사 팍십이재 산제골, 너래골, 큰터골 좌사들	【마을】 【고개】 【골짜기】 【전답】	화암 3리	제 1반
	"	제 2반	음지좌사 좌사들 문방안 동가산 모개이소 소리개재[鶯峙]	【마을】 【전답】 【바위】 【산】 【소】 【고개】	"	제 2반
	"	제 3반	오산(鰲山) 봉우산 능풍들, 굴개들 오무재, 문재[門峴]	【마을】 【산】 【전답】 【고개】	"	제 3반
	화암 4리	제 1반	화표동 옥녀골, 산지동골, 되기골	【마을】 【골짜기】	화암 4리	제 1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화암면	화암 4리	제 2반	큰터[大基], 후원(後園), 노갈리 절골, 새덕골, 승지골, 장골, 재골	" 제 2반
	화암 4리	제 3반	활개이 활개골, 매천황골, 고충골, 말미골 비슬이재	" 제 3반
	석곡 1리	제 1반	억실(億實) 수리들 누에머리 가래골, 뒤뜰 퇴재, 말목재	석곡 1리 제 1반
	"	제 2반	덕거리(德巨里), 소리개, 도른들 궁포, 불땡기양지 소리개재[鳥峙] 알재, 궁가산 투신개골	" 제 2반
	"	제 3반	수리골[水流洞], 방평(芳坪), 애리, 마덕(馬德), 방두독골 가래미골, 큰두리골, 보리산골, 화골 수리들	" 제 3반
	석곡 2리	제 1반	돌목, 하돌목, 후면(後面), 양지편 석문(石門) 동무 장광들 배지름골	석곡 2리 제 1반
	"	제 2반	돌목 성진산(聖眞山) 보리산골	" 제 2반
	"	제 3반	상돌목[上石項], 골안, 빈지내	" 제 3반
	"	제 4반	상돌목[上石項], 장승백이, 거미대(巨美臺) 마산재, 동산	" 제 4반
	북 동 리	제 1반	문치재, 다래재골 문치골, 물방골, 다래골[月愛谷] 큰소래골, 작은소래골, 수리병골 무널, 뒷골길, 뒷골 상신날	북 동 리 제 1반
	"	제 2반	상북동(上北洞), 제자거리, 막거리, 이매기 양지누르골, 숯가마골, 이매가골, 도투마리골 이무소산	" 제 2반
	"	제 3반	중북동, 하북동(下北洞) 윗매골, 배나무골 박신재, 도골 동무등	" 제 3반
	"	제 4반	함바위 돌골[石谷], 큰터 재마골, 쇠골, 신들골, 곰보가골, 서낭뒤골, 앞모랭이골, 도롱골, 노나무골 용소 곰목이재 웃물내기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화암면	몰운 1리	제 1반	한치(汗峙)	【마을】	몰운 1리	제 1반
			직골	【골짜기】		
	"	제 2반	가산갱(佳山坑)	【동굴】	"	제 2반
			양지마을	【마을】		
			큰승지골, 뢰기골, 들미골	【골짜기】		
			소금강, 지령곡(地靈谷),			
			소둔지	【산】		
			지레이굽, 설암개구장	【하천】		
			설암(雪岩)	【바위】		
	몰운 1리	제 3반	음지마을	【마을】	"	제 3반
			샛둔지	【전답】		
			들미골	【골짜기】		
			창재	【고개】		
	몰운 2리	제 1반	광대곡(廣大谷)	【마을】	몰운 2리	제 1반
			광대산(廣大山)	【산】		
	"	제 2반	수국개, 활대고데이	【골짜기】	"	제 2반
			버들굴(柳谷)	【마을】		
	"	제 3반	샛갯봉	【산】		
			덧재	【고개】		
			몰운, 아랫제동, 각희골	【마을】	"	제 3반
			몰운대(沒雲臺), 뒷재봉우리,			
			앞산봉우리	【산】		
			산탈골	【골짜기】		
	"	제 4반	제동(猪洞), 웃제동	【마을】	"	제 4반
			큰제동골, 개골	【골짜기】		
			지역산, 동뫼산, 늪잔등	【산】		
			각희재길, 글안재	【고개】		
			큰소구녕	【동굴】		
	건 천 리	제 1반	본동, 웃마을	【마을】	건 천 리	제 1반
			덧재, 새금, 송이재,			
			바람부리	【고개】		
			홍대골, 잠대골, 노장골,			
			용수골, 손이골, 통로골	【골짜기】		
			배골재	【산】		
	"	제 2반	큰벌(大坪),		"	제 2반
			장아리(茭阿里)	【마을】		
	"	제 3반	후언이	【고개】	"	제 3반
			소일	【마을】		
			매골, 참나무골,			
			버무덕골, 늑골	【골짜기】		
			덕심이재	【고개】		
	호 촌 리	제 1반	양지모태이, 갈번지,		호 촌 리	제 1반
			석둘, 어우슬(於牛膝)	【마을】		
			앞뺨, 뒷재	【산】		
			수억당이	【전답】		
			자개골, 어우실골	【골짜기】		
			봉이재	【고개】		
	"	제 2반	마산	【산】	"	제 2반
			지르메	【고개】		
			구영소	【소】		
	호 촌 리	제 3반	풍촌(豊村)	【마을】	호 촌 리	제 3반
			삼봉, 관청재	【산】		
			버섯골, 향골, 샛골,			
			쇠작것	【골짜기】		
			상나무재	【고개】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화암면	호 촌 리	제 4반	호명(虎鳴), 양지마을, 음지마을, 호리봉, 창재[獐峙], 감재[甘峙], 뽕고, 학교터밭들, 삼구리밭들, 채이골, 주담밭골, 음유이골[玉雲洞], 등목재	" 제 4반
	백전 1리	제 1반	정승골, 승상골(丞相谷), 바윗골, 송골, 무개골, 무등기, 후골, 서원기(書院基), 갈매지골, 불다재골, 피내재골, 클만골, 예터골, 호숫매기골, 선릉, 당거마우, 회대봉, 장봉, 술거네, 새논지, 늪안, 등등재	백전 1리 제 1반
화암면	백전 1리	제 2반	평밭거리, 합수거리, 합수동	" 제 2반
	"	제 3반	개들, 샷샷봉, 백전, 모녀에, 머구들골, 늪등골, 앞새골, 학교음산, 늪등	" 제 3반
	"	제 4반	백전	" 제 4반
	백전 2리	제 1반	마당목(場項), 장수바위골, 느서목골, 당부터골, 재피골, 고수밭골, 소사밭골, 큰구, 배나무골, 공천재, 느르목	백전 2리 제 1반
	"	제 2반	한소리, 용소마을, 아래고사밭골, 회고사밭골, 잔옹하니소골, 송기재들, 오반골, 머반골, 상가반골, 습골, 다래골, 베개터골, 가래밭골, 용소(龍潭), 용소부교, 백저리, 천제봉, 물레방아	" 제 2반
	"	제 3반	노나무, 노나무재, 다래골, 무덤실골, 피넛골, 큰재민골, 뽕골, 놀바우양지	" 제 3반
	"	제 4반	노나무	" 제 4반
	문곡 1리	제 1반	별어곡(別於谷), 지장천(地藏川)	문곡 1리 제 1반
	"	제 2반	별어곡(別於谷), 팔봉산	" 제 2반
	"	제 3반	별어곡(別於谷), 별어곡역, 자리바우	" 제 3반
남 면	"	제 4반	별어곡(別於谷)	" 제 4반
	"	제 5반	별어곡(別於谷)	" 제 5반
	"	제 6반	별어곡(別於谷), 음지촌(陰地村), 개바른이, 큰오담(霧隱潭), 철골	" 제 6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남면	문곡 1리	제 7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7반
	"	제 8반	자미원입구 【마을】	" 제 8반
	"	제 9반	수려안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수려안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수려안아파트,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11반
	문곡 2리	제 1반	고무골, 큰서덕, 점말(店村) 【마을】 어르메기, 함박골, 흙재이지골, 솔구렁이, 큰당골, 산제골, 상사골, 빈지골, 난치나무골 【골짜기】 줄솔배기, 북동산 【산】 문등바우 【바위】 샘물내기 【샘】 벌밭 【전답】	문곡 2리 제 1반
	문곡 2리	제 2반	골말 【마을】 가재골, 목재이골, 둔지골 【골짜기】 목쟁이 【고개】 가개산 【산】 덕새 【전답】	" 제 2반
	"	제 3반	구등, 바깥구등, 안구등, 탑거리통노구골 【마을】 절골, 구수골, 옛터골, 절골, 샘골, 큰통노구골, 재피골, 울둔이골 【골짜기】 마당맥이 【전답】 마차재 【고개】	" 제 3반
	문곡 3리	제 1반	자미원(紫味院), 오지구 【마을】 약물내기 【샘】 약물골, 운골, 물구지골 【골짜기】 두리봉 【산】	문곡 3리 제 1반
	"	제 2반	삼지구 【마을】 어둔이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은빛마을, 옷말, 서낭밀, 솔안 【마을】 자미원역 【역】 수리재 【산】 수리재터널 【터널】 수리재골, 가장골, 뒷골, 부채골, 팔향골, 절골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아랫마을, 중간마을, 갈강지버덩 【마을】 새물내기 【샘】 덕새 【전답】 큰마당골, 승자미 【골짜기】 새재 【고개】	" 제 4반
	무룡 1리	제 1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무룡 1리 제 1반
	"	제 2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문곡 2리	제 2반	골말 【마을】 가재골, 목재이골, 둔지골 【골짜기】 목쟁이 【고개】 가개산 【산】 덕새 【전답】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남면	" 제 3반	구등, 바깥구등, 안구등, 탑거리, 통노구골 【마을】 절골, 구수골, 옛터골, 절골, 샘골, 큰통노구골, 재피골, 울둔이골 【골짜기】 마당매이 【전답】 마차재 【고개】	" 제 3반
	문곡 3리 제 1반	자미원(紫味院), 오지구 【마을】 약물내기 【샘】 약물골, 운골, 물구지골 【골짜기】 두리봉 【산】	문곡 3리 제 1반
	" 제 2반	삼지구 【마을】 어둔이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은빛마을, 웃말, 서낭밑, 솔안 【마을】 자미원역 【역】 수리재 【산】 수리재터널 【터널】 수리재골, 가장골, 뒷골, 부채골, 팔항골, 절골 【골짜기】	" 제 3반
	" 제 4반	아랫마을, 중간마을, 갈강지버덩 【마을】 새물내기 【샘】 덕새 【전답】 큰당골, 송지미 【골짜기】 새재 【고개】	" 제 4반
	무릉 1리 제 1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무릉 1리 제 1반
	" 제 2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2반
	" 제 3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멀미주공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웃궁터, 아랫궁터, 뒷양지 큰골, 물개골, 바른골, 높은가마, 돼지뒹굴, 참선이골 【골짜기】	" 제 8반
무릉 2리	제 1반	젓말, 자고치, 역새마을, 외자고치, 안자고치 【마을】 시루봉 【산】 뒷골개구장 【하천】 뒷개울골, 피아골, 안자고치골 【골짜기】 마발이재 【고개】	무릉 2리 제 1반
	" 제 2반	덕만(德蠻), 싸리실(砂理室), 돌티미 【마을】 뒷골, 덕골, 피내재골, 싸리재골, 금동매골, 직구랑골, 뒷싸리실골 【골짜기】 피내재 【고개】	" 제 2반
	" 제 3반	능전(能田) 【마을】 능전골, 문안골, 건논골, 밭구덕골 【골짜기】 가산 【산】	무릉 2리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남면	무릉 2리	제 4반	쇠골,금곡(金谷),은골, 발구덕(發九德) 【마을】 발구덕샘 【샘】 철골,산자골,바랭이골,잔골, 각희재골,찰골 【골짜기】 지덕산(芝德山),삿갓봉, 【산】 민등산,춧대봉 【고개】 각희재 【도로】 각희재길	" 제 4반
	무릉 3리	제 1반	증산,탑거리 【마을】	무릉 3리 제 1반
	"	제 2반	자뭇골,탑거리 【마을】	" 제 2반
	"	제 3반	너래골 【골짜기】 자뭇골 【마을】	중전 " 제 3반, 제 4반(그린빌라 구역)
	"	제 4반	자뭇골 【마을】	중전 " 제 4반
	"	제 5반	자뭇골 【마을】 밤나무골,뽕벌구,새재골, 철골,큰마당골 【골짜기】 도토마등 【산】	중전 " 제 5반
	무릉 4리	제 1반	증산(甓山) 【마을】	무릉 4리 제 1반
	"	제 2반	증산(甓山) 【마을】	" 제 2반
	"	제 3반	증산(甓山) 【마을】	" 제 3반
	"	제 4반	증산(甓山) 【마을】	" 제 4반
	"	제 5반	증산(甓山) 【마을】 민등산역 【역】 행교골 【골짜기】 늪등 【산】	" 제 5반
	"	제 6반	증산(甓山) 【마을】	" 제 6반
	"	제 7반	증산(甓山) 【마을】	" 제 7반
	"	제 8반	증산(甓山) 【마을】	" 제 8반
	"	제 9반	증산(甓山)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증산(甓山) 【마을】	" 제 10반
	무릉 5리	제 1반	정지간,묵산(墨山) 【마을】	무릉 5리 제 1반
	"	제 2반	정지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9반
유평 1리	제 1반	제 1반	젓마을,메기돌,소마평(小馬坪), 방아실 【마을】 큰골,피파골 【골짜기】 바당동과산들사역 【산】 양짓마을,거리말 【마을】 한치재 【산】 소마평(小馬坪), 아살미[我山米] 【마을】 큰방아골,서낭골, 【골짜기】 고병계곡(高屏溪谷) 【산】 장재,매봉재,갈거리산 【하천】 오파천(鰲波川) 【동굴】 석혈(石穴) 【마을】 새마을[新村],곧은모태이, 【마을】 중간모태이 【바위】 말병바우 【골짜기】 아살마골,재기실골	유평 1리 제 1반
	"	제 2반	"	" 제 2반
	"	제 3반	"	" 제 3반
	"	제 4반	"	" 제 4반
	"	제 5반	"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남면	" 제 5반	새마을(新村),아랫모태이 자차골,큰넘바우골,제당골, 작은넘바우골,아랫골, 가는골,뫼골,절터산성골 들이산성 【마을】 【골짜기】 【바위】	" 제 5반
	유평 2리 제 1반	한치(汗峙),오름실 동막골,한치골 말등바우산,팟대봉 【마을】 【골짜기】 【산】	유평 2리 제 1반
	" 제 2반	버드내(柳川),곰말 쥐골 미사리재 천파랭이골 【마을】 【골짜기】 【고개】 【동굴】	" 제 2반
	" 제 3반	삼내,동기촌,고일(古日), 안골 새양골 고두 삼내약수 살바우골,새안골, 뒷구레이 【마을】 【샘】 【고개】 【약수】 【골짜기】	" 제 3반
	낙동 1리 제 1반	거칠현동(居七賢洞),건개 큰고개,거칠현재 초당병 산성,상상봉,서운산(瑞雲山) 갓산성골,벼락바우골,너래골, 보리산골 【마을】 【고개】 【절벽】 【산】 【골짜기】	낙동 1리 제 1반
	" 제 2반	남창(南倉),수밭 어룡골,도장골,보리산골, 쟁배이골,고무덕골,절골 보리산 【마을】 【골짜기】 【산】	" 제 2반
	" 제 3반	선평(仙坪),양짓마을 뒷가산,지르메봉 낙풍천(樂豐川) 공동들 노룡골 쇠재지르메재,소재 【마을】 【산】 【하천】 【전답】 【골짜기】 【고개】	" 제 3반
	낙동 2리 제 1반	갸들(蟻坪) 【마을】	낙동 2리 제 1반
	" 제 2반	음지마을,양짓말 산자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웃말,맏둔(梅屯),북천 진고개재 뒷덕 【마을】 【골짜기】 【전답】	" 제 3반
	" 제 4반	뒷내(後川),덧넘에,뒷내골, 탑거리 천마산(天馬山),능무덤 솔개재,문두치,단방귀재 문두골 【마을】 【산】 【고개】 【골짜기】	" 제 4반
	낙동 3리 제 1반	음달말 백야산(伯夷山),소재 감투바우 이구만묵밭 어두궁이골 【마을】 【산】 【바위】 【전답】 【골짜기】	낙동 3리 제 1반
	" 제 2반	음달말 선평역 새밭이 새밭골 【마을】 【역】 【전답】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음달말 속섬 【마을】 【전답】	" 제 3반
	" 제 4반	음달말 샘들고개 【마을】 【고개】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남면	낙동 3리	제 5반	샘들[泉坪], 선들, 구정뱅이 못들밭 치개병, 각둔이 증골, 당골 광대비리	" 제 5반
	광덕 1리	제 1반	수령(首嶺), 초두평(草頭坪), 기와집터 동지봉, 수리봉, 달구봉[鷄峰] 머리재, 터골재, 수령목, 배고개 사모바우 새매기골, 메골【골짜기】	광덕 1리 제 1반
	"	제 2반	영골, 영곡(靈谷), 은향골 터골, 너비개구장골, 막바우골, 작은능골, 큰능골, 울둔이골 터골재, 머리재	" 제 2반
	"	제 3반	채운(菜雲), 돌티미[石帶], 방아실, 수아위[禾岩] 채운골, 뒷골, 웃둔이골, 무개골, 자치골, 바실골, 벼락바우골, 고리골, 방아실재, 생골, 재골, 산지대이골 옥녀봉, 뽕족봉, 벽암산(霹靂山) 신당고개 강선대 장재터 칠선탕	" 제 3반
	"	제 4반	너배이, 광방(廣坊)【마을】 범골, 새골, 애기골, 산제골 꼬부랑재, 트리재, 문발재, 영곡재 곰봉[熊峰]	" 제 4반
	광덕 2리	제 1반	송오리(松梧里) 우목골 덕내산	광덕 2리 제 1반
	"	제 2반	광탄(廣灘), 마리나【마을】 승전말등 통골목골, 안골【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양지말 귀나무쟁이 증골개골 보수병 마등산 송고개 성고개	" 제 3반
	"	제 4반	서마루[三宗], 바깥서마루, 안서마루, 서지(徐旨), 갈금(葛金), 덕산동, 재름개, 역밭[驛田] 증골, 쇠골, 올창골, 무랑골, 신발골 감투봉, 매봉산 마치둔재, 구슬목이, 너툰이재 굴고개 용바위[龍岩]	" 제 4반
여량면	여량 1리	제 1반	여량(餘糧), 여량촌(餘糧)	여량 1리 제 1반
	"	제 2반	여량	" 제 2반
	"	제 3반	여량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여량면	여량 1리	제 4반	여량, 녹고마니, 문아구 새두독 제당골[祭壇谷], 절골, 산지대이, 무심골, 사실골, 너 르메골 붉은뽕대 박달고데이 큰명지목이, 살개봉, 털구렁이, 광산봉, 반륜산(半輪山), 잘록봉 고양천	" 제 4반
	"	제 5반	여량	" 제 5반
	여량 2리	제 1반	상동	여량 2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장거리	" 제 2반
	"	제 3반	상동	" 제 3반
	"	제 4반	상동	" 제 4반
	"	제 5반	상동, 아우라지들 아우라지	" 제 5반
	여량 3리	제 1반	하동	여량 3리 제 1반
	"	제 2반	여량	" 제 2반
	"	제 3반	여량 덕구미	" 제 3반
	"	제 4반	마산재마을, 벌안 마산재, 용전 꽃배루 녹고개 선두골, 배골	" 제 4반
	여량 4리	제 1반	상동	여량 4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염장봉(鹽臙峰) 다랫벌	여량 4리 제 2반
	"	제 3반	상동	" 제 3반
	"	제 4반	상동	" 제 4반
	"	제 5반	상동, 비석거리 상동, 류뱃들이	" 제 5반
	"	제 6반	곰바리 배바리 복구골, 복호골, 큰잔발골, 소낭뒹골, 작은잔발골, 새고라지골, 큰쇠고라지, 작은쇠고라지, 절골 수리봉, 뒹번지기 곰바리굴	" 제 6반
	"	제 7반	곰바리	" 제 7반
	"	제 8반	곰바리	" 제 8반
	여량 5리	제 1반	가금(加金), 당너머 옥갑산(玉甲山) 절골[寺谷], 고음동(古音洞), 골금, 골금골 당고개 상투베리	여량 5리 제 1반
	"	제 2반	윗마을 썰매들	" 제 2반
	"	제 3반	윗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여량면	유천 1리	제 1반	송천(松川), 송정 절골, 유골, 여골 복개등, 상산터, 달뜨기 독재 송정길 여송정(餘松亭)	유천 1리 제 1반
	"	제 2반	그물목이 가마소 코클베리	" 제 2반
	"	제 3반	개금벌 범바우골, 범바우구렁 공동산 숫금소	" 제 3반
	"	제 4반	싸리골, 뒷버덩 궁대, 꽃대봉, 내피골속등 속골, 작은속골, 내피골, 서작골	" 제 4반
	유천 2리	제 1반	윗지경, 늑바위 막두골, 아랫북바위골, 윗북바위골, 재피골, 되골 붉은병애, 굴아우	유천 2리 제 1반
	"	제 2반	유문재 지경(地境), 장자터 뒷벌 왕재골, 사창개골	" 제 2반
	"	제 3반	달뜨골, 월부동(月浮洞), 자분골(磁墳谷), 배지기, 양지마을, 장자터 왕재산 자개골, 달뜨골, 질매재골, 호랑골	" 제 3반
	유천 3리	제 1반	흥터 황새바우 두릉소 해산나들이들	유천 3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말, 맛두둑, 마평(馬坪) 달개치, 가물재 달개골, 고무골, 약물골 맛두둑길	" 제 2반
	"	제 3반	갯거리, 관괘동(冠掛洞) 맛두둑골 뒷물소	" 제 3반
	"	제 4반	자개골(自開谷), 자개앗 통골, 지당골, 작은가지내미, 큰가지내미, 여내골, 표골 흘망재, 마당목이 상원산(上元山), 옥백마지기, 숫돌봉, 숫돌배기	" 제 4반
	구절 1리	제 1반	삼거리	구절 1리 제 1반
	"	제 2반	삼거리, 본동, 하구절, 덕갈밭 다락산(多樂山) 협신골	" 제 2반
	"	제 3반	본동	" 제 3반
	"	제 4반	본동	" 제 4반
	"	제 5반	본동	" 제 5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여량면	" 제 6반	본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구절역		" 제 7반	
	" 제 8반	본동	【마을】	" 제 8반	
		자개(自開), 자개앗, 장두덕이, 장두데기, 아랫자개, 가래둔지, 상자개, 불당골, 지칠데기, 거문골, 금동(琴洞)	【마을】		
		장수골, 밤나무골, 작은거문골	【골짜기】		
		가루고개, 밤나무재(栗木峙)	【고개】		
	구 절 2리 제 1반	양지마을	【마을】	구 절 2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마을	【마을】	" 제 2반	
	" 제 3반	양지마을	【마을】	" 제 3반	
	" 제 4반	종량, 왕신(往信), 절골, 사지목이	【마을】	" 제 4반	
		종량산, 오장산, 노추산(魯鄒山)	【산】		
		종량골	【골짜기】		
		병풍바위, 안도리지돌이, 다래미한숨바우	【바위】		
		오장폭포	【폭포】		
		이성대(二聖臺)	【누각】		
	구 절 3리 제 1반	중동, 수리내미, 소래동, 수이동, 세찌모탕이	【마을】	구 절 3리 제 1반	
고 양 리		사달골, 작은벌막골, 원골, 덕골, 작은사달, 병풍바우골, 내미골, 너래골, 이시밭골, 물푸레	【골짜기】		
		사달산(四達山), 새양봉, 새목재(鳥項峙)	【산】		
		넛둔지, 말구덩이, 시루방우둔지	【둔지】		
		목넘이재, 덕재	【고개】		
		시루방우	【바위】		
	" 제 2반	중동	【마을】	" 제 2반	
		고비덕, 괴비데기	【둔지】		
		괴비데기골, 물안골, 고집골	【골짜기】		
		중동샘물	【샘】		
	" 제 3반	쇠꿍나들이	【마을】	구 절 3리 제 3반	
		송새골	【골짜기】		
		사지목이등판	【산】		
	제 1반	신기동(新基洞), 가래실 티리, 절터골, 제당골, 절골, 큰잣바우골, 너래막골	【마을】	고 양 리 제 1반	
		속새등, 박달고데이, 짚룩목재이	【골짜기】		
		장수바우, 용바우	【산】		
고 양 리		용소폭포	【바위】		
	" 제 2반	스무골(二十谷)	【폭포】	" 제 2반	
		피앗골, 살구나무골, 제당골, 고무실골, 물금골, 서낭땃골	【마을】		
		남산	【골짜기】		
	" 제 3반	삼거리(三街洞), 안터	【산】	" 제 3반	
고 양 리		솔안	【마을】		
		찢기골, 옥단이골, 굴물골	【산】		
고 양 리		굴물등	【골짜기】		
			【동굴】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여량면	고 양 리	제 4반	큰골 큰재골, 상재골, 벌그무살골, 항기골, 가르매골 상정바위 중복골, 벌그무골, 돌골 마치(馬峙), 큰마치, 꼬부랑재, 곰목이재 북방우, 고양산(高陽山), 쾌현산 고창골(古昌谷) 아랫골, 명지막골, 화금골, 산자골, 음터골, 빈지골, 벼락골, 산막골, 쇠막골 반론산 벼락재	제 4반
	"	제 5반	중복골, 벌그무골, 돌골 마치(馬峙), 큰마치, 꼬부랑재, 곰목이재 북방우, 고양산(高陽山), 쾌현산 고창골(古昌谷) 아랫골, 명지막골, 화금골, 산자골, 음터골, 빈지골, 벼락골, 산막골, 쇠막골 반론산 벼락재	제 5반
	"	제 6반	고창골(古昌谷) 아랫골, 명지막골, 화금골, 산자골, 음터골, 빈지골, 벼락골, 산막골, 쇠막골 반론산 벼락재	제 6반
남 곡 리	제 1반	제 1반	앞실골 두리봉, 작은등부리, 첫등부리, 중간등부리, 수패봉, 장군바우재, 화채봉 샛골, 그샛골, 등부리골, 가달팽이, 화채봉골 용바우 고사리, 웃말, 아랫말, 말게 빈터골, 살구나무골, 서낭골, 배나무골, 구지내골, 풀무간골, 새달이골, 쇠골 행상목이, 터께 고비덕길 괴비덕말랑 큰너그니재, 유현(鎭峴), 너근령【고개】 되골, 도일동, 웃골, 아랫골, 되여구, 굴아우, 북바우 감재등 애미골, 쇠작아골 굴등지, 남곡재, 매봉산 터께 쇠작아골	제 1반
	"	제 2반	고사리, 웃말, 아랫말, 말게 빈터골, 살구나무골, 서낭골, 배나무골, 구지내골, 풀무간골, 새달이골, 쇠골 행상목이, 터께 고비덕길 괴비덕말랑 큰너그니재, 유현(鎭峴), 너근령【고개】 되골, 도일동, 웃골, 아랫골, 되여구, 굴아우, 북바우 감재등 애미골, 쇠작아골 굴등지, 남곡재, 매봉산 터께 쇠작아골	제 2반
	"	제 3반	되골, 도일동, 웃골, 아랫골, 되여구, 굴아우, 북바우 감재등 애미골, 쇠작아골 굴등지, 남곡재, 매봉산 터께 쇠작아골	제 3반
여량면	봉 정 리	제 1반	내봉정(內鳳亭), 옛골, 여촌(餘村) 웃말 달그메 한고개 여우새 한방소 웃말뻗터 송정거리 옥터, 옥밭둔지 골말, 샛말 작은너서피골, 큰너서피골, 큰할미골, 거문골, 달개골, 곰바우골, 벼락재골, 속새골, 범바우골 방두둑, 고수치 비룡산 별말, 관터, 날개터 별말뻗터 청룡골 승지골 발면(發綿), 발면동(發綿洞) 공수골, 매골 작은수리봉, 큰수리봉	제 1반
	"	제 2반	옥터, 옥밭둔지 골말, 샛말 작은너서피골, 큰너서피골, 큰할미골, 거문골, 달개골, 곰바우골, 벼락재골, 속새골, 범바우골 방두둑, 고수치 비룡산 별말, 관터, 날개터 별말뻗터 청룡골 승지골 발면(發綿), 발면동(發綿洞) 공수골, 매골 작은수리봉, 큰수리봉	제 2반
	"	제 3반	별말, 관터, 날개터 별말뻗터 청룡골 승지골 발면(發綿), 발면동(發綿洞) 공수골, 매골 작은수리봉, 큰수리봉	제 3반
	"	제 4반	발면(發綿), 발면동(發綿洞) 공수골, 매골 작은수리봉, 큰수리봉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여량면	봉 정 리	제 5반	외봉정, 새치, 근너새치, 새치양지 돛티미, 청룡이 활록목	" 제 5반
북평면	장열 1리	제 1반	장열(長悅) 과대바리 골등, 꽃밭재 골등골 열몸내기	장열 1리 제 1반
	"	제 2반	장열(長悅) 온수골, 바림부리 장열나루터	" 제 2반
	"	제 3반	장열(長悅) 술가재, 큰길, 뽕죽봉 꽃배루 위배나루터 장열소	" 제 3반
	"	제 4반	장열(長悅)	" 제 4반
	장열 2리	제 1반	하남골 산제골(山祭谷) 갈바지 가평항 이등별	장열 2리 제 1반
	"	제 2반	가드루 가평나루 울창소 하남옛골 옥녀봉(玉女峰)	" 제 2반
	"	제 3반	범바우 덕장골	" 제 3반
	북평 1리	제 1반	북평(北坪), 하동, 미루네(密雲) 거무소, 아랫거무소, 북평소 용소강	북평 1리 제 1반
	"	제 2반	하동	" 제 2반
	"	제 3반	하동	" 제 3반
	"	제 4반	하동	" 제 4반
	"	제 5반	하동	" 제 5반
	북평 2리	제 1반	하동	북평 2리 제 1반
	"	제 2반	불은언덕 두리봉, 난향산 난향로원	" 제 2반
	"	제 3반	상동	" 제 3반
	북평 3리	제 1반	상동	북평 3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 제 2반
	"	제 3반	상동	" 제 3반
	"	제 4반	상동	" 제 4반
	"	제 5반	상동	북평 3리 제 5반
	"	제 6반	상동	" 제 6반
	"	제 7반	상동	" 제 7반
	북평 4리	제 1반	하동	북평 4리 제 1반
	"	제 2반	하동	" 제 2반
	"	제 3반	하동	" 제 3반
	"	제 4반	하동	" 제 4반
	"	제 5반	하동	" 제 5반
	"	제 6반	하동	" 제 6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북평면	북평 5리	제 1반	항골項洞, 양지마을 남관골(南館谷) 너스메기	【마을】 【골짜기】 【산】	북평 5리 제 1반	
	"	제 2반	항골項洞, 석두(石頭) 이차골(我差谷), 도천차배기골 저대탑(石塔) 두리봉	【마을】 【골짜기】 【산】 【탑】	" 제 2반	
	"	제 3반	항골項洞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항골項洞 강처야(降仙庵) 농부들 농소골, 차랑골, 양푸내기	【마을】 【산】 【고개】 【골짜기】	" 제 4반	
	북평 6리	제 1반	상동	【마을】	북평 6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나천역	【마을】 【역】	" 제 5반	
	남평 1리	제 1반	본동, 석석(省石), 솔들, 새릿골	【마을】 【마을】	남평 1리 제 1반	
	"	제 2반	본동, 고갯마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본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본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음모테이 오음봉(五音峰) 오음로 북천(北津) 평전소(坪屯沼) 연골	【마을】 【산】 【고개】 【나루】 【소】 【골짜기】	" 제 5반	
	"	제 6반	신촌(新村)	【마을】	" 제 6반	
	"	제 7반	장승배기, 새마을 남평나루터[南坪津], 소문배나루 도룡수, 용소(龍沼) 용마루	【마을】 【마을】 【나루】 【소】 【바위】	" 제 7반	
	“ (삭제) ”	제 8반 (삭제)			“ (삭제) ” 제 8반(삭제)	
	남평 2리	제 1반	고갯마을, 새릿골어귀	【마을】	남평 2리 제 1반	
	"	제 2반	고갯마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다슬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다슬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다슬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봉화치(奉火峙) 거린봉화치, 한대골(寒垆谷), 반들아니 복차골	【산】 【마을】 【골짜기】	" 제 6반	
	남평 3리 (신설)	제 1반 (신설)	문화마을	【마을】	종전	남평 1리 제 1반(문화마을)
		제 2반 (신설)	문화마을	【마을】	종전	" 제 1반(문화마을)
		제 3반 (신설)	문화마을	【마을】	종전	" 제 1반(문화마을)
		제 4반 (신설)	농촌휴양단지	【마을】	종전	" 제 1반(문화마을)
	문곡리	제 1반	본동, 물금 우투메기 복두그니 상정바위 문곡나루	【마을】 【골짜기】 【산】 【바위】 【나루】	문곡리 제 1반	
	"	제 2반	큰골, 작은골 마재(馬埭), 잣바위	【마을】 【고개】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북평면	문 곡 리 제 3반	스무골[二十洞], 배냇골, 백운동(白雲洞) 【마을】 꽃대봉, 시무산 【산】 새릿골, 뒷골, 배나무골 【골짜기】 지르메재 【고개】	" 제 3반
	나전 1리 제 1반	배미, 웃배미, 아랫배미, 새물출이, 음달마을, 방두둑 【마을】 할미골, 문바우골, 큰골, 【골짜기】 밤나무골, 송장골, 배도골 【산】 민동산, 수리봉, 판봉, 높은봉 【바위】 상집바우 【역】 송석역	나전 1리 제 1반
	나전 1리 제 2반	명주내[明絢川], 구단이 【마을】	나전 1리 제 2반
	" 제 3반	명주내[明絢川], 어라전, 웃터골, 암반대기 【마을】 명지내산 【산】	" 제 3반
	" 제 4반	어도원(於桃源), 싸리덕 【마을】 오두치(烏頭峙) 【고개】 웃목골, 큰골 【골짜기】	" 제 4반
	나전 2리 제 1반	진드루, 쇠지르기 【마을】 큰다래골, 새미골 【골짜기】	나전 2리 제 1반
	" 제 2반	진드루 【마을】 싸리골, 작은다래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졸드루, 가느드루 【마을】 탐상골, 제당골, 석두골, 【골짜기】 신촌배터	" 제 3반
	숙 암 리 제 1반	우면주(牛眠州), 낚은터 【마을】 오대천 【하천】 성향골, 장구목이 【골짜기】 오짐(烏岑), 가리왕산 【산】	숙 암 리 제 1반
	" 제 2반	벗발, 높은테[高基], 깊은터 【마을】 금곡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큰터, 통진목[通津項], 【마을】 소나무터 【산】 안돌이지돌이, 다래미한숨바우 【골짜기】 갈미봉골, 큰쇠골, 작은쇠골	" 제 3반
	" 제 4반	단임(丹林), 바깥단임, 【마을】 안단임, 장재테[長財基] 【골짜기】 계룡잡(鷄龍岑), 우동골	" 제 4반
임계면	가 목 리 제 1반	가목(柯木), 부수배리 【마을】 새덕, 버덩들 【전답】 새목골, 명주목골, 신흥골, 질골, 【골짜기】 배나무골, 너래골, 두래골, 굴아우골, 칠만이골 매봉산, 갈미봉, 달팽이산, 【산】 상월산 【고개】 명주목이, 원방재 【고개】 이기령(耳基嶺), 더바지령 【고개】 가목천(柯木川) 【하천】	가 목 리 제 1반
	" 제 2반	군대(軍臺), 눈꽃마을 【마을】 자병산(紫屏山) 【산】	" 제 2반
	가 목 리 제 3반	마상골 【마을】 나발고데이 【산】 백복령 【고개】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임계면 임계면	도전 1리	제 1반	외도전, 밧뺨 뒗터덩 메니미 【마을】 【산】 【골짜기】	도전 1리 제 1반
	"	제 2반	외도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뒗골 사자목이, 새목이 선바위골 새목이 용소(龍沼) 【마을】 【고개】 【골짜기】 【고개】 【소】	" 제 3반
임계면	도전 2리	제 1반	점구비, 기추목이, 지남바우, 간촌, 사시내 점곡들 아우라지 풀방아골 선바위산 【마을】 【들판】 【하천】 【골짜기】 【산】	도전 2리 제 1반
	"	제 2반	내도전(內道田), 상두밭, 장아리 병골, 사시래골, 매바위골, 버드내골, 굽은골, 너래골, 부처바우골, 굽은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직원 1리	제 1반	밧뺨, 외도전 【마을】	직원 1리 제 1반
	"	제 2반	밧뺨, 영두촌 방우리버덩 상장바우골, 사리미골 【마을】 【전답】 【골짜기】	" 제 2반
	직원 2리	제 1반	피원 큰피원, 골말, 꼬치골, 화절촌 뒗봉 【마을】 【골짜기】 【산】	직원 2리 제 1반
	"	제 2반	큰피원, 영마루 수무골, 큰뚝다리골, 비선거리골 【마을】 【골짜기】 【산】	" 제 2반
임계면	"	제 3반	형제봉, 민동산 반당두, 당두 생계령, 갈고개 【전답】 【고개】	" 제 3반
	"	제 3반	구룡동, 늪은피, 노직동(老稷洞), 작은피원 【마을】	" 제 3반
	"	제 3반	뒗병골, 큰골, 작은골, 통로골, 부대지골 【골짜기】 【고개】	" 제 3반
	임계 1리	제 1반	귀새, 점촌, 검무나들이, 안검무 귀산골 버들샨, 안검들 검무고개 마산봉, 고갯재 【마을】 【골짜기】 【전답】 【고개】 【산】	임계 1리 제 1반
	"	제 2반	독토고지 【마을】	" 제 2반
	"	제 3반	독토고지, 가장골, 물방아골, 사리미골, 한사리골 【골짜기】 【마을】	" 제 3반
	"	제 4반	맬나무골 장승거리 거리골, 큰골 도름산 도름산말들 【마을】 【골짜기】 【산】 【전답】	" 제 4반
임계면	임계 2리	제 1반	태봉 태봉안 【산】 【마을】	임계 2리 제 1반
	"	제 2반	양짓말, 음짓말, 골말, 관마을, 관두골 태봉들 【마을】 【전답】	" 제 2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임계면	임계 2리 제 3반	가실피 범골 가실피재 삿갓봉 【마을】 【골짜기】 【고개】 【산】	" 제 3반
	임계 3리 제 1반	고내, 화성 【마을】	임계 3리 제 1반
	" 제 2반	고내 살피골, 월대골, 나근터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웃고내, 금방동, 하금방동, 새밭목이 【마을】 북동골, 지르마골 【골짜기】 석병산(石屏山) 【산】	" 제 3반
	임계 4리 제 1반	갈마동, 갈미늪, 큰골, 큰골종점, 평양밭, 큰평양, 작은평양, 지르마동 【마을】 매봉 【산】 영뿔골 【골짜기】	임계 4리 제 1반
임계면	임계 4리 제 2반	노루마당, 바깥노루마당, 운대동, 명소동(鳴沼洞), 늘목이 【마을】 팔발골, 운대장골 【골짜기】	임계 4리 제 2반
	송계 1리 제 1반	소래골 큰너그니재 보섭령(步攝嶺) 【마을】 【고개】 【고개】	송계 1리 제 1반
	" 제 2반	송원동(松院洞) 소란 양지마을 중골 웃골 【마을】 【마을】 【마을】 【골짜기】 【골짜기】	" 제 2반
	송계 2리 제 1반	골말, 웅기장골 버들고개 【마을】 【고개】	송계 2리 제 1반
	" 제 2반	골말 【마을】	" 제 2반
	송계 3리 제 1반	송계동 【마을】	송계 3리 제 1반
	" 제 2반	송계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송계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송계동 【마을】	" 제 4반
	송계 4리 제 1반	뒷말(後洞) 【마을】	송계 4리 제 1반
	" 제 2반	뒷말(後洞) 【마을】	" 제 2반
	" 제 3반	뒷말(後洞) 【마을】	" 제 3반
	" 제 4반	뒷말(後洞) 고두벌들 【마을】 【밭】	" 제 4반
	" 제 5반	뒷말(後洞) 【마을】	" 제 5반
	송계 5리 제 1반	새베리, 골말 질골, 집골 【마을】 【골짜기】	송계 5리 제 1반
	" 제 2반	골말어귀 【마을】	" 제 2반
	" 제 3반	칠성바위 등말, 등모태이 【바위】 【마을】	" 제 3반
	" 제 4반	검무평(劍舞坪), 검무, 안검무 보안산 검무평들 【마을】 【산】 【전답】	" 제 4반
	송계 6리 제 1반	송계동 【마을】	송계 6리 제 1반
	" 제 2반	장터거리 【마을】	" 제 2반
	" 제 3반	장터거리 【마을】	" 제 3반
	" 제 4반	뒷마을 【마을】	" 제 4반
	송계 7리 제 1반	송계동 【마을】	송계 7리 제 1반
	" 제 2반	송계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송계동 【마을】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임계면	송계 8리	제 1반	골말 버들고개 웅기장골, 횃골	송계 8리 제 1반
	"	제 2반	골말	" 제 2반
	"	제 3반	골말 쇠잡느골, 문둥이골	" 제 3반
임계면	봉산 1리	제 1반	송천동	봉산 1리 제 1반
	"	제 2반	송천동	" 제 2반
	"	제 3반	송천동	" 제 3반
	"	제 4반	장찬동 장찬성 우시장터 안산, 마산봉	" 제 4반
	"	제 5반	동산아파트	" 제 5반
	"	제 6반	동산아파트	" 제 6반
	봉산 2리	제 1반	봉산 봉산들	봉산 2리 제 1반
	"	제 2반	봉산 두리봉	" 제 2반
	"	제 3반	바우안 안산	" 제 3반
	봉산 3리	제 1반	등봉동, 둔병골, 안터, 회목이 물아우골 황장산, 두리봉	봉산 3리 제 1반
	"	제 2반	구미동, 가랭이 구미정(九美亭)	" 제 2반
	"	제 3반	말루, 메두	" 제 3반
임계면	낙천 1리	제 1반	역드루	낙천 1리 제 1반
	"	제 2반	태골	" 제 2반
	"	제 3반	태골 광산골, 이십맥이, 우무골, 매골, 설미재골, 갈거리골	" 제 3반
	낙천 2리	제 1반	버덩마을 소들골 용소, 용상계 용마골 독지매기	낙천 2리 제 1반
	"	제 2반	미락동, 중마을 본태골, 소특재골 미락숲 소특재	" 제 2반
	"	제 3반	골말 지름골	" 제 3반
	"	제 4반	사을기, 절터굴 산성골 노인봉	" 제 4반
	낙천 3리	제 1반	오누골, 조개골, 가래포기골 무릎재비	낙천 3리 제 1반
	"	제 2반	설내, 혈천 목이너미, 솟고개, 당고개 설내들	" 제 2반
	"	제 3반	설내	" 제 3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임계면	용 산 1리	제 1반	달탄,골안골,월탄 【마을】	용 산 1리 제 1반
	"	제 2반	달탄 【마을】	" 제 2반
	"	제 3반	월탄들 【전답】	" 제 3반
	용 산 2리	제 1반	달탄 【마을】	용 산 2리 제 1반
	"	제 2반	싸근다리,햇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돈들,건네들,돈들양지마을 【마을】	" 제 3반
	문 래 1리	제 1반	바리골 【골짜기】	문 래 1리 제 1반
	"	제 2반	위령산(威靈山) 【산】	" 제 2반
	"	제 3반	용골,구역말,용골들 【마을】	" 제 3반
	문 래 2리	제 1반	중구평(中邱坪) 【전답】	문 래 2리 제 1반
	"	제 2반	자후재 【고개】	" 제 2반
	"	제 3반	용골 【마을】	" 제 3반
	문 래 3리	제 1반	양지마을 【마을】	문 래 3리 제 1반
	"	제 2반	양지마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문래산 【산】	" 제 3반
	문 래 4리	제 1반	마태골 【골짜기】	문 래 4리 제 1반
	"	제 2반	하동,골모탕이 【마을】	문 래 4리 제 2반
	"	제 3반	가는골 【골짜기】	" 제 3반
	문 래 5리	제 1반	새넛가 【마을】	문 래 5리 제 1반
	"	제 2반	독장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새목이 【고개】	" 제 3반
	"	제 4반	봉고등 【산】	" 제 4반
	"	제 5반	갈버등,버덩 【전답】	" 제 5반
고양면	문 래 6리	제 1반	새루 【마을】	문 래 6리 제 1반
	"	제 2반	새루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박달고딩이 【산】	" 제 3반
	"	제 4반	골지천(骨只川) 【하천】	" 제 4반
	"	제 5반	석둔 【마을】	" 제 5반
	"	제 6반	작은골 【골짜기】	" 제 6반
	"	제 7반	은고개 【고개】	" 제 7반
	"	제 8반	장터거리 【장터】	" 제 8반
	덕 암 리	제 1반	음달마을,골거리,말미,병두 【마을】	덕 암 리 제 1반
	"	제 2반	소래길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소래골,큰소래,작은소래 【마을】	" 제 3반
	"	제 4반	소래재 【고개】	" 제 4반
	"	제 5반	소래어구,삼거리,탑거리 【마을】	" 제 5반
	"	제 6반	큰가산 【산】	" 제 6반
	"	제 7반	복상재 【고개】	" 제 7반
	"	제 8반	구룡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뱃눈골 【골짜기】	" 제 9반
	"	제 10반	무널골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동무지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샘배리골 【골짜기】	" 제 12반
	"	제 13반	북동재 【고개】	" 제 13반
	"	제 14반	장강촌,버실이,우밀,공전 【마을】	" 제 14반
	고 양 리	제 1반	수터,손오거리 【마을】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안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하승두(下升斗) 【마을】	" 제 3반
	"	제 4반	고무덕골,무릎재비골 【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무릎재비재 【산】	" 제 5반
	"	제 6반	하일(下日),고수마리골 【마을】	" 제 6반
	"	제 7반	여내골 【골짜기】	" 제 7반
	"	제 8반	상승두 【마을】	" 제 8반
	"	제 9반	다래재 【고개】	" 제 9반
	"	제 10반	덕질골,재미골 【골짜기】	" 제 10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신설)	구 역
임계면	고 양 리 제 5반	노나무,적목동(赤木洞), 덕질(德峙),새말,웃말 【마을】 고양산(高陽山),괘현산 【산】	" 제 5반
	반천 1리 제 1반	웃재론,새이말 【마을】 새말들 【전답】 절골,말미골 【골짜기】 돌고지재 【고개】	반천 1리 제 1반
	" 제 2반	재론,아랫재론,양지말,음지말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노일(魯日),여우실 【마을】 여우새,한고개 【고개】	" 제 3반
	" 제 4반	도장골 【마을】 월루골 【골짜기】	" 제 4반
	반천 2리 제 1반	둔봉골,건네사을기 【마을】	반천 2리 제 1반
	" 제 2반	느랏,어전동(於田洞), 버덩마을,큰마을,산성(山城) 【마을】 안깨산 【산】	" 제 2반
	" 제 3반	월루 【마을】 북바우재 【산】	" 제 3반
	" 제 4반	월루 【마을】 도둑골 【골짜기】 월루재 【산】	" 제 4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반운영규칙</u>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정선군 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u>명칭</u>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반장의 경질) ①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u>해촉</u>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반사회 운영실적 평가) ①반사회 운영실적은 상하 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u>다음해 1월중에</u> 평가한다. ②반사회 운영실적은 다음 <u>각호</u>에 의거 평가 한다. 1. <u>기간중</u> 반사회개최회수 2. ~ 6. (생략)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사회 개최2~3일전에 반장에게 <u>시달하여야</u> 한다. ②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u>정선군 반 운영 규칙</u>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 ----- ----- <u>명칭 및 자연지명</u>----- ---. 제4조(반장의 경질) ①----- ----- ----- <u>위촉을 해제</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반사회 운영실적 평가) ①----- ----- ----- <u>다음 해 1월 중</u> -----. ②----- <u>각 호</u>----- -----. 1. <u>기간 중</u> -----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 ----- -- <u>알려야</u> -----. ②----- -----.

상부건의사항, 타기 관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처리기록) ①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협조사항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알려야 ---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갖추 두고---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

건의반에 알려야 -----.

② ----- 주민 -----

건의사항 처리요령-----
-----.

제안이유

- 가. 반별 자연지명 부여를 통한 군민 정체성 고양 및 역사적 전통성 보존.
 나.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반 신설 및 조정 필요.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주요내용

- 가. 반별 자연지명 조항 신설 (별표)
 나. 행정리 및 반 조정 (남평3리, 4개반 신설) (별표)
 ○ 조정 총괄 내역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폐지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합 계	182	963							증1	증3	183	966	
정선읍	35	233									35	233	
고한읍	20	113									20	113	
사북읍	13	119									13	119	
신동읍	26	132									26	132	
화암면	13	49									13	49	
남 면	15	82									15	82	
여량면	14	65									14	65	
북평면	14	64	1	4				1	증1	증3	15	67	
임계면	32	106									32	106	

○ 조정 세부 내역

- 행정리 : 북평면 남평1리 7반(2가구) 및 8반(58가구) → 남평3리 신설
 - 행정반 : 북평면 남평1리 8반 폐지 및 남평3리 4개반 신설

다. 규칙 제명 띄어쓰기 적용

- 「정선군 반운영규칙」 ⇒ 「정선군 반 운영 규칙」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반영

-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2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사망 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명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수수료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의 사망 및 유족 확인)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근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 편의 제고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의 최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항을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